

碩士學位論文

濟州地域 호텔업의 會計處理 實態

指導教授 李 京 柱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會計學科 會計學專攻

柳 光 美

2002

濟州地域 호텔업의 會計處理 實態

指導教授 李 京 柱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6月 日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會計學科 會計學專攻



柳 光 美

柳光美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2年 6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제 2 장 호텔회계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제 1 절 호텔업의 개관	4
1. 호텔업의 기본개념	4
2. 호텔의 등장배경	5
3. 호텔회계제도의 발전	7
제 2 절 호텔 회계제도의 이론적 고찰	8
1. 호텔회계의 특성	8
2. 호텔기업의 경영특성	11
3. 호텔 회계시스템	14
제 3 절 호텔 회계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15
제 3 장 호텔회계제도의 비교 : 기업회계기준과	
미국호텔회계제도(USAH)	19
제 1 절 우리나라 호텔회계제도의 실태	19
제 2 절 기업회계기준	21
제 3 절 미국호텔회계제도(USAH)	22
제 4 절 기업회계기준과 USAH의 비교	26
1. 기본 재무제표의 종류 비교	26

2. 대차대조표 작성상의 차이점	28
3. 손익계산서 작성의 차이	33
제 4 장 제주지역 호텔의 회계처리 실태분석	44
제 1 절 제주지역 호텔업의 현황	44
1. 국내관광호텔의 현황	44
2. 제주지역 관광호텔의 현황	45
제 2 절 실태분석의 방법	45
1. 표본의 선정	45
2. 실태조사 설문지의 이론적 접근	46
3. 설문지의 작성과 조사내용	49
4.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50
제 3 절 실태분석의 결과와 해석	51
제 4 절 실태분석의 요약	68
1. 제주지역 호텔업 회계처리 실태분석 결과 요약	68
2. 선행연구의 실태분석 결과와 비교	70
제 5 장 결 론	75
참고문헌	78
ABSTRACT	80
부록(설문지)	83

표 목 차

<표 3-1> 기본 재무제표의 비교	27
<표 3-2> 대차대조표 작성의 차이점 비교	32
<표 3-3> 손익계산서 작성의 차이점 비교	36
<표 3-4> 부문별 손익계산서 작성의 차이점 비교	42
<표 4-1> 지역별/등급별 관광호텔 현황	44
<표 4-2> 제주지역 관광호텔 현황	45
<표 4-3> 설문문의 구성	50
<표 4-4> 호텔 등급별 현황	51
<표 4-5> 호텔 등급별 객실수	51
<표 4-6> 호텔 등급별 영업방침 중점부문	52
<표 4-7> 등급별 호텔업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필요성	52
<표 4-8> 호텔업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될 경우 적용대상	53
<표 4-9> 등급별 현행 회계제도의 방법	53
<표 4-10> 호텔업에서 작성이 꼭 필요한 재무제표	56
<표 4-11> 필수적 부속명세서중 작성이 불필요한 명세서	56
<표 4-12> 임의적 부속명세서중 호텔 작성이 필요한 명세서	57
<표 4-13> 등급별 외상매출금계정의 구분처리	58
<표 4-14> 등급별 외상매출금계정의 구분처리 의견	58
<표 4-15> 등급별 호텔 특성상 재고자산의 구분방법	59
<표 4-16> 등급별 호텔 특성상 재고자산의 구분방법 의견	59
<표 4-17> 등급별 집기 비품계정의 구분방법	60
<표 4-18> 등급별 집기 비품계정의 구분방법 의견	60

<표 4-19> 등급별 매출액의 업장별 구분 표시	61
<표 4-20> 등급별 매출액의 업장별 구분 표시 의견	62
<표 4-21> 등급별 업장별 매출원가의 구분 표시	63
<표 4-22> 등급별 업장별 매출원가의 구분 표시 의견	63
<표 4-23> 등급별 호텔 원가계산기준제도의 설정 필요성	64
<표 4-24> 등급별 봉사료 수입계정의 기재항목	64
<표 4-25> 등급별 봉사료 수입계정의 기재항목 의견	64
<표 4-26> 등급별 기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66
<표 4-27> 등급별 간접(공통)비용 배분기준 설정의 필요성	67
<표 4-28> 등급별 간접(공통)비용 배분기준 활용실태	67
<표 4-29> 일반적 사항 비교	70
<표 4-30> 기본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관한 사항 비교	71
<표 4-31> 대차대조표에 관한 사항 비교	72
<표 4-32>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 비교	74

그 립 목 차

<그림 2-1> 호텔회계시스템	15
------------------------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문명의 이기에 의한 여가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관광산업은 21세기의 유망한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오늘날 관광산업은 국제관광객의 증가로 인하여 산업의 촉진과 진흥을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평화산업(peace industry)이 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성장률을 나타내는 산업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타산업과 비교하여 외화소득률과 부가가치가 높은 무형의 수출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WTTC(World Travel Tourism Council)의 자료에 의하면 국제관광객수는 연평균 4% 이상 성장하여 2010년에는 10조 달러(US \$10trillion)의 경제적 활동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광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그 비중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¹⁾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호텔산업이고 여타 관광산업보다도 복잡한 경쟁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생존과 발전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원가절감과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경영의 내실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호텔은 숙박을 중심으로 숙박객과 이용자에 대하여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영업내용과 판매형태는 일반기업과는 다른 면이 많다. 또 고객의 증가와 욕구의 다양화라는 최근의 경향에 대응하여 호텔 경영내용도 다각화되고 있으

1) 김재민, 「관광경영론」, (서울 : 일신사, 2001), p.7

며, 각 영업장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여 인식, 기록, 보고하는 기능이 절실히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호텔업인 것이다. 이러한 호텔의 수익 원천과 그에 대한 회계상의 특성도 이런 영업내용과 판매형태, 취급상품 등의 특별성에 기인한 것이다.

호텔기업이 일반기업과 다른 회계절차를 이루는 데는 호텔업 특유의 상거래형식 때문이다. 비보관성, 비이동성, 비양도성인 일일단위의 객실이용권, 식음료제공, 내방고객이 이용하는 시설이용(연회장, 수영장, 사우나 등)을 상품매출로 회계처리하고 종사원들의 무형 인적서비스 제공도 상가치로 보고 위의 타상품에 부가하여 매출로 처리하는 특성이 있다. 호텔영업이라 함은 물건을 사고 팔면 끝나는 상품매출업과는 다르게 상품을 이용하고 그 이용이 끝나는 시점에 매출이 결정되며 고객이 떠나는 시점에 현금매출이냐, 외상매출이냐가 결정된다는 특성이 있다.²⁾

한편 건설업과 리스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투신업, 종금업, 상호신용금고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되어 있지만 호텔업은 일반기업과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회계제도가 없어 회계처리, 계정과목, 보고양식 등이 통일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호텔간 비교가 쉽지 않고 목적적합성, 신뢰성, 일관성 등과 같은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정보의 유용성이 크게 저하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호텔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미국의 통일된 호텔회계제도(USAH : Uniform System of Accounts for Hotels)와 우리나라 호텔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회계제도와 차이점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선행연구(부산·대구지역)의 호텔업 회계처리 실태의 결과를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토대로

2) 김혁수, “한국 호텔업의 회계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1987, pp.13~14.

제주지역 호텔업의 회계처리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논문의 제주지역 호텔업의 회계처리실태 분석이라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적인 고찰과 실증적인 분석의 두 가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문헌적인 고찰로는 호텔회계의 이론적인 고찰을 위해 호텔업에 대한 각종 연구 논문을 살펴보며, 미국의 통일된 호텔회계제도(USAH : Uniform System of Accounts for Hotels)와 우리나라 호텔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회계제도와 차이점을 분석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제주지역 호텔업 회계처리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선행연구(대구, 부산지역)의 호텔업 회계처리 실태분석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본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지역에 등록된 관광호텔 41개 업체중 최근에 영업을 하지 않는 1등급 호텔 3개업체와 재무제표 작성업무 등은 외부의 회계사무소에 의뢰하고 있는 호텔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여 총24개 업체를 조사대상호텔로 선정하였다.

본 논문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 1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및 구성에 대한 기술이며 제 2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호텔업에 대한 기초개념과 호텔업 회계제도의 이론적 고찰에 대해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우리나라 호텔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회계제도와 미국의 통일된 호텔회계제도(USAH)내용을 살펴보고 차이점을 비교하여 본다. 그리고 제 4장에서는 제주지역 호텔업의 회계처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선행연구(대구, 부산지역)의 호텔업 회계처리 실태 분석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본다. 제5장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제 2 장 호텔 회계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호텔업의 개관

1. 호텔의 기본개념

호텔의 어원은 「용성한 대접」을 뜻하는 라틴어의 Hospitalis라는 형용사의 중성어인 「순례자나 참배자, 나그네를 위한 숙소」를 뜻하는 Hospitale에서 출발하였으며 이 Hospitale가 고대,중세의 프랑스로 Hostel이 되어 근래의 영어로 받아들여졌으며, “S”의 음이사라져 현재 영어와 불어의 Hotel로 쓰여지게 되었다. 중세에 있어서 Hostel은 숙박의 장소, 기숙사, 대저택의 의미로 각각 사용되어졌었는데 현재 호스텔은 숙소의 의미를 따서 Youth Hostel은 청소년을 위한 저렴한 숙박시설로, Hotel은 숙박시설의 의미로 Inn보다 고급 숙박시설로 굳어지게 되었다. Inn은 14C 영어의 동사로 「숙박시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숙박시설 자체를 표현하는 명사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게 되었다. 또한 Hospitale는 고대 중세불어로 「Hospital」현재 불어 및 영어의 “Hospital”로 변형되어 병원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어 “Hospitale”는 “Hotel” “Hospital(병원)” “Hostel(숙소)”등의 파생어를 만든 것이다.³⁾

일반적으로 호텔의 정의는 “호텔이란 예절바르게 또한 받은 접대에 대한 지불능력 및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시설의 여유가 있는 한 수용이 허락되며 체재기간 및 보상 등에 관한 약정 없이 체제 중에는 타당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식사, 침실 등이 제공되며 그 집을 임시적으로 가정으로 이용하는데는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서비스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이다”

3) 강익준, 「관광사업개론」, (서울 : 삼영서관, 1996), p.88

그러나 사회가 다변화되어 감에 따라 호텔의 개념과 기능도 다양하게 변질되어 현대적 호텔의 개념은 고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것 외에

첫째, 관광오락을 즐기면서 휴양 혹은 휴식을 하는 장소로서
둘째, 각국 혹은 민족 특유의 요리를 접할 수 있는 장소로서
셋째, 회의실을 구비하게 됨에 따라 국제교류, 문화교류, 학술교류와 공공회의를 통한 지역 사회 정보교류의 장소역할도 하게 되었다.⁴⁾

2. 호텔의 등장배경

호텔기업은 이미 14세기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등장하였으며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호텔기업은 유럽전역과 미국에서 본격적인 산업형태로 발전하였다.

유럽의 경우 비교적 현대적 시설과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게 된 호텔은 19세기초 독일의 바덴바덴시의 바디체 홉(Der Badische Hof)이 그 효시라고 한다. 이 호텔은 객실과 식당 이외에 넓은 홀, 이동식 무대, 냉온수 공급 시설 등을 설비하게 되어 각종 회의 개최와 쇼 관람이 가능하게 되었다.⁵⁾

독일에서 이 호텔이 출현하여 고객에게 각광을 받게 되자 프랑스, 스위스의 대도시 및 휴양지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호텔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이미 1794년 뉴욕시에 상용호텔로서 시티호텔이 등장하였으나 호텔기업의 기능과 양식, 서비스 내용면에 결정적인 영향과 자극을 준 것은 1829년 보스톤시에 건립된 트레몬트호텔이었다.

이 호텔은 현대적 의미에 있어 호텔의 기초적인 것들이 시도되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4) 小林薫, 「新ホテル經營入門」, (東京, 1970), p.12

5) 鈴木博, 「近代hotel經營論」, (東京: 紫田書店, 1988).

1908년에 설립한 바팔로, 스타틀로호텔은 트레몬트호텔보다 좀 더 보충된 시설을 갖추었다.

그후 미국은 계속해서 시설의 보완 개선과 새로운 양식을 도입함으로써 유럽 지역의 호텔보다도 시설이나 규격면에서 앞서게 되었으며 운영방식까지도 호텔기업의 역사가 긴 유럽지역을 능가하게 되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면에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제국은 귀족층의 취미에 맞도록 호화로움에 치중하였고 또 보수주의적인 경향을 띄었으나 미국 호텔기업의 경우 대중의 취향에 부합되어 사회조류에 맞는 진취적인 자세로 호텔기업의 시설과 기능을 변질시키는데 과감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⁶⁾

우리 나라의 경우 1888년 인천에 세워진 대불호텔이 그 효시라고 볼 수 있다. 1902년에는 정동에 세워진 손탁호텔은 최초의 근대 서양식 호텔로서 객실, 가구, 장식품, 악기, 의류 및 요리가 모두 서양식으로 등장하였으며 프랑스 요리가 처음으로 제공되었다.

1914년이 지나서 우아한 건축미와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서울 중심지에 건립된 조선폰텔은 당시 국내호텔에서는 없었던 연회장 넓은 로비와 유희 시설 등을 갖춘 근대적 호텔로서의 기능을 다하였다. 그 후에도 몇몇 호텔들이 세워졌고 1966년의 세종호텔을 비롯 1970년에 들어서면서 미국관광객의 현저한 증가추세에 발맞추어 코리아나호텔, 롯데호텔, 하이얏트호텔, 신라호텔 등의 호텔들이 등장하여 대규모화와 고급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호텔사업은 경제성장에 보조를 맞추면서 관광사업의 부흥과 외화획득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국제적인 관광부흥(Boom)을 타고 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⁷⁾

6) 김충호, 「호텔경영학」, (서울 : 형설출판사, 1980), p.17

7) 강익준, 「관광사업개론」, (서울 : 삼영서관, 1996), p.92

3. 호텔회계제도의 발전

1920년대의 미국의 경제는 주식회사 제도에 의한 기업의 발달로 호경기를 가져왔으며 이는 호텔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많은 호텔들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호텔산업의 규모가 확대됨과 동시에 개개의 호텔규모도 대형화되고 그 기업활동을 기록하는 절차도 복잡하게 되었으며 호텔산업의 사회적 공공성도 강하게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호텔기업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도 점차로 증대되어 그 기업의 실태와 업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⁸⁾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1925년 뉴욕호텔협회(The Hotel Association of New York)가 경영자위원회(Proprietor's Committee)에 USAH의 입안을 제의하고 경영자위원회는 호텔정리책임자회의(Hotel Accounts' Committee)에서 제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기초안은 뉴욕주 공인회계사회(New York State Society of CAPs)를 대표한 차일드(C. P. Child)와 미국 공인회계사회를 대표한 크란스탄(W. D. Cranstoun)등이 심의하여 규정제정위원회(Manual Committee)에서 확정함으로써 처음으로 호텔의 통일된 회계제도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1926년 이후 개정위원회(Revision Committee)에 의해 8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1986년 8차 개정은 국제숙박정리인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ospitality Accountants)에 의해 이루어져 현재와 같은 호텔통일회계제도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1986년에 이르기까지 여덟 번의 개정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호텔회계는 근대기업의 한 전문분야로서 모든 호텔기업이 그 회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기업회계의 회계기준과 같은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주로 실무를 중심으로 한 호텔통일회계기준 제정작업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와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 연구

8) 山口祐司, 「ホテル管理會計」, (東京: 田書店, 1988), pp.3~4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관광협회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1979년 한국관광협회의 관광호텔 회계제도 개선 및 통일화에 따른 호텔통일회계제도와 1989년 한국관광협회로부터 한국관광학회가 용역을 받아 제출한 관광호텔 회계메뉴얼이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대부분은 우리나라 호텔업 회계처리제도에 대한 문제점만 제기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미국호텔 회계제도(USAH : Uniform System of Accounts for Hotels)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을 토대로 하여 재무제표 양식을 제시하는 한편 계정과목을 설명하는 등 주로 문헌적 연구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제 2 절 호텔 회계제도의 이론적 고찰

1. 호텔회계의 특성

호텔은 숙박을 중심으로 숙박객과 외래이용객에 대하여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계상의 특성도 이런 영업내용과 판매형태, 취급되는 상품등의 특별성에 기인한 것이다.

1) 영업내용의 특성

USAH의 부문별손익계산서상 영업부문의 수익원천은 다음과 같다.

- ◎ 내외국인의 숙박을 위한 객실부문
- ◎ 식당 및 연회행사와 주류판매를 위한 식음료부문
- ◎ 전신·전화부문
- ◎ 주차장 부문
- ◎ 고객세탁부문
- ◎ 골프장과 골프 전문용품점부문
- ◎ 테니스장과 테니스 전문용품점부문

- ◎ 헬스클럽부문
- ◎ 수영장부문
- ◎ 기타 영업부문
- ◎ 임대 및 기타 수익부문

이처럼 최근의 경향인 고객의 증가와 욕구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호텔경영내용도 다각화되고 있다. 호텔의 종류에는 숙박객을 중심으로 숙박객에 한해 식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호텔과 식사·연회가 중심이 되는 도시호텔 등이 있지만 숙박객과 외래이용객을 위한 생활의 장소로서의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호텔이 있다. 따라서, 호텔에서의 회계조직과 관리체제도 다양한 영업내용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호텔수익원천은 객실수익, 식음료수익, 연회장수익 그리고 기타 수입 등이 있으며 제각기 전혀 다른 성격의 영업장이 호텔이라는 하나의 기업안에 존재한다. 따라서 각 영업장 수익과 비용에 대응하여 인식, 기록, 보고하는 기능이 절실히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호텔기업이다.

(1) 객실수익

숙박객의 객실요금과 식사고객, 회의·연회·결혼식 등의 행사고객에 의한 객실대실료를 포함한다. 주수익원인 숙박객의 객실요금을 중심으로 체크인(check in)부터 체크아웃(check out)까지의 업무처리와 함께 발생하는 회계처리를 후론트회계라고 하며 호텔의 주요 수익원이 된다.

(2) 식음료수익

식당, 빠, 커피숍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관한 회계처리를 식당회계라고 하며 호텔의 회계시스템상 특징의 하나가 된다. 숙박객이 식당과 커피숍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식당회계는 후론트회계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숙박객의 매출을 후론트회계에 집계해야 한다.

(3) 기타영업수익

전신·전화수익, 세탁수익, 주차장수익, 골프장수익, 수영장·사우나수익,

임대 및 기타수입이 포함되며, 각 영업장별로 담배, 과자, 토산품, 신문·잡지, 잡화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또 휴양지호텔에서는 골프장, 볼링장, 스키장 등의 스포츠시설, 오락시설 등의 이용요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매출에 대해서는 발생한 영업장에서 집계를 하지만 숙박객의 매출에 대해서는 발생한 영업장에서 집계를 하지만 숙박객의 매출은 신속하게 후론트 회계에 집계해야 한다.

2) 판매형태상의 특성

(1) 고객의 특성

소규모 호텔기업의 고객은 숙박객 중심이지만 대규모 도시호텔 등에서는 식당이나 커피숍만을 이용하는 손님이나 연회, 행사용으로 장소를 대여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숙박객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반이용객에 대해서도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숙박객의 회계와 일반고객의 회계처리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영업시간의 특성

영업시간은 영업장의 성격에 의해 달라져 식당과 매점은 아침에서 저녁까지, 빠는 저녁부터 심야까지, 객실은 통상 저녁부터 익일 낮까지(장기체제의 경우 24시간)로 일치하지 않고 영업이 24시간 중무휴로 지속된다. 따라서, 매일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결산집계가 필요하며 심야에도 회계업무를 관장하는 야간감사원 (night auditor)이 필요하게 된다.

(3) 거래의 단위 및 장소의 특성

고객의 특징에서 보면 거래의 단위는 숙박객의 객실매출의 경우 1박요금과 음료매출의 경우는 1회 정도로 판매에서 회수까지는 극히 단기간이고 매출금액은 연회행사를 제외하고 비교적 소액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그 매출이 일정시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의 계산, 기록, 집계, 회수 등의 작업을 단시간 내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매출의 종류

가 많아서 전표등의 증빙서류가 다종다양하기도 하고 회계처리에 상당한 노력을 요하게 된다.

판매를 행하는 부문도 후론트가 중심이지만 식당, 빠, 매점 등 많은 부서로 나누어서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텔기업에서는 각 판매부서에서의 회계처리를 신속·정확하게 행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집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나 회계시스템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회수방법의 특성

고객이 불특정 다수인 것, 이용기간이 단기인 것, 당일 매출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호텔기업에서는 매출대금의 회수는 대부분 현금 혹은 신용카드로 회수하게 된다. 따라서, 후론트회계원과 식당회계원 등이 많은 현금을 취급하므로 일일 현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약 입금의 과부족이 생겨나도 사후에 추가회수 한다거나 반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금을 취급하는 장소(후론트, 식당, 매점의 회계원등)에서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집계와 보고를 정확히 해야 한다.

2. 호텔기업의 경영특성

숙박업으로서의 호텔업은 상품적 특성에 있어서 시설, 설비 및 종사원에 의한 무형적인 서비스와 요리 등의 유형적인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며, 9)서비스를 베푸는 종사원과 받는 객체인 관광객과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환대산업(hospitality industry)”으로서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호텔의 주상품은 객실과 식음료 그리고 부대시설이며, 여기에 종사원의 인적서비스를 포함하여 완전한 하나의 상품으로 되는 것이다. 호텔은 이와 같이 다른 산업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호텔경영의

9) 岡本伸之, 「列島ホテル戦争」, (日本: 日本經濟新聞社, 1990), p.206.

기본적인 문제를 이해하려면 다소간의 차이점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호텔업의 일반적인 경영특성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⁰⁾

(1) 고정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일반 기업보다 높은 산업이다.

호텔업은 고정자산에 대한 비중이나 의존성이 다른 일반기업보다 커서 건물이나 시설의 비중이 전투자액의 70~80%가 된다. 이것은 호텔에 있어서 고정자산 자체가 상품의 특성을 가지고 객실과 식음료 부문에서 이러한 시설물로 수익성은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설계나 시설의 좋고 나쁨이 호텔 상품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설은 경영자에 의해서 항상 연구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2) 시설이 다른 일반 기업보다 빨리 노후화 된다. 호텔의 건물 및 부대시설은 고객의 이용과는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진부화 하기 때문에 시설, 가구 등에 대한 부단한 개선이 요구되며, 또한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로 국제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설개선을 하여 국제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에 유지되는 시설의 수명보다도 호텔의 고정자산은 더 빨리 노후화 된다.

(3) 호텔은 연중무휴로 1일 24시간 영업을 하는 기업이다.

호텔은 1일 24시간의 영업을 하는 기업으로 호텔과 고객과의 관계는 휴일이 있을 수 없고, 최고의 서비스와 만족을 위해서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호텔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근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호텔은 고객이 휴식을 취할 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므로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4) 입지조건, 등급, 성격에 따라 성·비수기 사이의 수요의 불균형이 심하다.

수요의 불균형으로 각각 상이한 수요주기에 따라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특히 가격전략 및 촉진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10) 김재민·신현주, 「현대호텔경영론」, (서울: 대왕사, 1991), p.197

또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수요동향에 근거한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여야 한다.

수요의 특성과 수요주기를 조화시킬 수 있는 시장세분화 및 표적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마케팅전략도 요구되고 있다.

(5) 인적 서비스가 중요하다. 현대 호텔경영의 기본요소로 3S가 있다. 서비스(Service), 세일즈(Sales), 과학화(Science)의 3가지이다.¹¹⁾ 여기서 서비스가 3요소중 하나로 자리잡은 이유는 인적서비스의 판매를 중요한 상품으로 간주하는 산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호텔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규격화된 서비스와 자동화된 기계설비에 의해서는 기대할 수 없다. 이처럼 호텔경영에 있어서 인적서비스, 즉 인적자원인 종사원의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다.

(6) 인적 서비스 제공으로 노동집약적이고 높은 이직율이 발생한다.¹²⁾ 인적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호텔영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종사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여러 형태의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및 영업부서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항상 서있는 상태로 근무하여야 하는데서 오는 육체적 피로감 등은 높은 이직율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시간관리를 통하여 근무시간을 경제적으로 조정하고 이직율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견하여 해결함으로써 종사원들이 이직 없이 고객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지 않으면 안된다.

(7) 각기 상이한 여러 부문의 기능이 끊임없이 원활히 협조되어야 한다. 호텔은 각기 상이한 여러 부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객을 맞아들이는 일부터 전송할 때까지 호텔이용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호텔내에서 구매

11) 김충호, 「호텔경영학」, (서울: 형설출판사, 1988), p25.

12) 황가익, “호텔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1994, p.12.

하게 되며, 다양한 서비스는 다양한 독립부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모든 부서들은 제각기 주어진 직무를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호텔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윤의 확보와 기업의 존속이 가능하게 되며 이를 수행하는데 가장 유효한 것이 협동이다.

3. 호텔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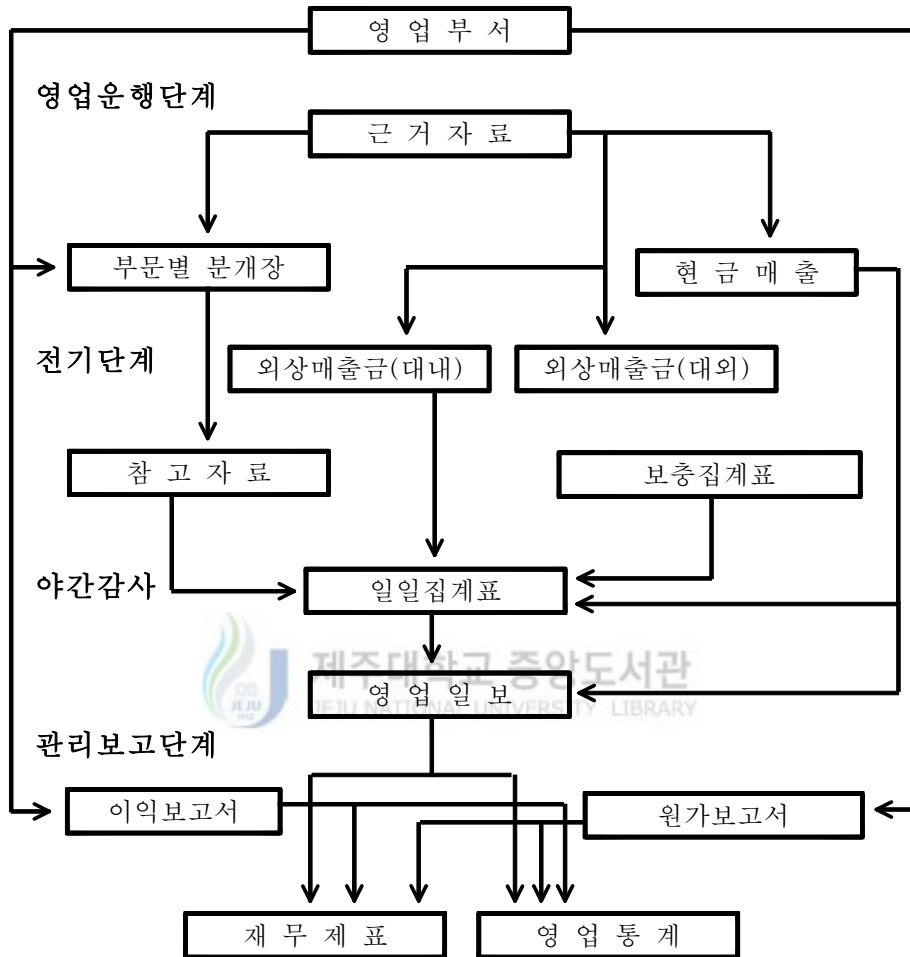
호텔회계정보시스템의 개념은 호텔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 조정, 통제하는 것과 호텔의 활동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과 기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4단계로 정리해 보면 영업운영단계(Operation Phase), 전기단계(Book Keeping), 야간감사단계(Night Audit Phase), 관리보고단계(Management Reporting Phase)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호텔산업에서 회계정보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그 실체에 미치는 영향과 효율성은 대단하다.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객실료와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됨으로써 계산과정상 사무착오가 없다. 그리고 미래에 이용고객에 대한 예측이 되므로 객실제공 및 식음료공급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초과예약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단말기 모니터의 예약상황에 의해 고객의 문의사항이나 변동사항을 즉시 처리해 줄 수 있으며 투숙객이 체크아웃시 요금계산을 쉽게 확인시켜 주어서 외상매출인 경우 여신부외상매출금계정(city ledger)이나 외상매출금계정으로 전기되고 이 계산서는 퇴숙한 고객에게 보내진다. 그리고 객실의 상황을 즉시 알려줌으로써 청소원들이 즉각적인 준비를 할 수 있어 객실판매업무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체크인과 체크아웃 과정이 아주 신속하다고 할 수 있다.¹³⁾

13) 김만술, “우리나라 관광호텔 회계정보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1988, pp.33~34

<그림 2-1> 호텔회계시스템



자료 : 조소윤, 「호텔관리회계론」, (서울:기문사, 1995), p.439

제 3 절 호텔 회계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호텔업 회계기준에 관한 연구는 실무계를 중심으로 현행 호텔회계처리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거나 통일회계기준 정립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 학술적인 선행연구

(1) 송기철의 논문¹⁴⁾은 한국관광호텔업의 회계처리 실태에 관한 연구로, 미국의 호텔회계처리의 특성과 우리나라 호텔회계처리의 특성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호텔회계처리의 현황 및 서울지역호텔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호텔회계처리기준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 김정호의 논문¹⁵⁾은 호텔업 회계처리의 실태와 개선방안의 연구로, 미국의 호텔회계처리실태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호텔회계처리의 실상과 문제점을 대구지역호텔을 중심으로 호텔현업에서의 경리실무자의 의식을 조사하여 호텔회계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3) 서승민의 논문¹⁶⁾은 한국 호텔업 회계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인데 이 논문에서는 부산지역 호텔을 중심으로 회계기준 적용실태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므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을 파악해보고 미국의 호텔회계제도와 일본의 호텔회계제도를 비교분석해서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부산지역 호텔들의 실증분석으로 알아보고 적절한 호텔회계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4) 김영욱의 논문¹⁷⁾은 호텔기업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특성으로 인해 다른 기업과는 차별화된 회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데서 시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호텔기업회계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호텔기업 회계기준 정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기하고자 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호텔회계제도 발전과정 및 호텔회계

14) 송기철, “한국관광호텔업의 회계처리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1999.

15) 김정호, “호텔업 회계처리의 실태와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1997.

16) 서승민, “호텔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1994.

17) 김영욱, “우리나라 호텔기업 회계기준의 정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1996.

이용유형을 알아본 후 우리나라의 실정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해 호텔기업 회계기준의 정립방안을 재무제표의 표준양식과 통일된 작성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내용을 위해 호텔기업 회계실무에 이용되는 회계처리 방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뒤 기업회계기준에 제시되는 업종별 회계처리 기준의 정립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미국의 호텔회계 처리기준과 우리나라 호텔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 기준으로 하는 기업회계기준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호텔기업 회계기준의 정립방안으로서 재무제표의 작성양식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철의 논문¹⁸⁾은 호텔회계기준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에 관한 연구인데 이를 위해 USAH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상의 차이점을 기본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기업회계기준이 호텔회계실무 적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 차이점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호텔업 회계기준의 제정방향을 재무제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6) 조봉기의 논문¹⁹⁾은 호텔업 회계처리준칙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기하면서, 미국의 USAH와 기업회계 기준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 호텔업 회계처리실태를 파악함으로써 USAH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호텔업의 실무적 관계를 존중하여 우리나라 호텔업의 실정에 맞는, 모든 호텔에서 적용하고 시행할 수 있는 호텔업 회계처리준칙이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7) 문성송의 논문²⁰⁾은 호텔업회계처리기준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인데 이 논문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호텔회계실무의 비교를 실증 연구하여 호텔

18) 이상철, “한국 호텔회계기준 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1997.

19) 조봉기, “우리나라 호텔업 회계처리준칙 정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경영대학원, 1998.

20) 문성송, “호텔업 회계처리기준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업 회계처리기준의 제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8) 최평윤의 논문²¹⁾은 호텔업 회계처리기준의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인데 이 논문에서는 USAH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을 비교 분석하고 호텔업 회계처리기준의 제정방향을 일반적 사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과 기타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2. 실무계의 선행연구

실무계를 중심으로 한 통일회계기준 제정작업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와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홍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설립된 한국관광협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관광협회의 관광호텔회계제정 개선 및 통일화에 따른 호텔통일회계 제도는 1979년 7월 10일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 착수된 것으로, 같은 해 10월 15일 1차로 호텔 통일회계제도입안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문제를 토의하여 제출한 안인데, 이 안은 채택은 되지는 않았으나 우리나라 호텔업 회계처리제도에 관한 연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관광호텔 회계메뉴얼(1989)은 한국관광협회로부터 한국관광학회가 용역을 받아 제출한 통일된 회계기준설정을 위한 연구이다. 주된 내용은 USAH와 기업회계기준은 재무제표작성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분석하고, 호텔업의 독자적인 회계처리 기준 설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계정과목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표준안의 제시 및 호텔업의 회계처리상 제반규정 및 계정과목의 해설과 호텔업의 회계메뉴얼 작성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주요한 영업활동에 대한 순서도(Flow Chart)를 제시하였다.

21) 최평윤, “호텔업 회계처리기준의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1990.

제 3 장 호텔회계제도의 비교 : 기업회계기준과 미국호텔회계제도(USAH)

제 1 절 우리나라 호텔회계제도의 실태

우리 나라 관광호텔 회계제도의 적용 실태를 보면²²⁾ 다음과 같다.

- (1) USAH를 도입하여 채택하고 있는 호텔
- (2) 국내 전문가의 개발에 의한 제도를 채택한 호텔
- (3) 호텔자체의 개발에 의하여 회계제도를 채택한 호텔
- (4) 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쓰고있는 호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회계제도에 대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의 호텔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채택하고 있는 호텔은 대부분 외국과의 합작법인 또는 경영기술을 도입한 호텔이다. 외국투자자들은 자사의 회계제도와 호텔회계의 기준이 되고 있는 미국의 USAH를 조화 있게 운영하면서 세계 다른 호텔과의 비교 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경영기술을 제공한 호텔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로서 그 호텔들이 채택한 회계제도는 미국의 호텔회계제도와 기본원리가 같은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② 국내 전문가의 개발에 의한 회계제도는 미국의 호텔회계제도를 우리나라의 기업체질과 회계관습에 맞도록 개발한 제도로서 몇 개의 호텔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③ 호텔 자체에서 개발한 회계제도는 기존 특급호텔에서 경리책임자들이 신축호텔에 입사하면서 그 호텔의 회계제도와 절충하여 입안한 제도

22) 송성진·임진섭, 「호텔 회계원리」, (서울: 일신사, 1988), pp. 16-19.

와 해외연수 등으로 자체 개발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④ 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한 호텔은 호텔경영이나 호텔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채택한 호텔이다.

우리 나라의 호텔들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제도를 호텔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서울 프라자 호텔

한국화약그룹과 일본 마루베니상사와의 합작법인으로 일본 Tokyo Prince Hotel의 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웨라톤워커힐 호텔

선경그룹이 워커힐을 인수한 후 미국의 Arthur Young Co. 한국지사에게 입안을 의뢰하여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조선폰텔

한국관광공사와 American Airline의 합작일 때에는 American Hotels가 경영을 위임받고 그 호텔의 회계제도를 채택하였으나 American Airline의 지분과 경영권을 Westin Hotels International이 인수한 후에는 회계제도도 Westin Hotel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서울 하이얏트호텔

호텔경영을 Hyatt International corp.에 위임하고 회계제도도 Hyatt International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신라호텔

삼성그룹이 일본 6개사와 합작으로 설립후 일본 Okura Hotel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회계제도도 Okura Hotel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 부산 코모도호텔

호주 코모도호텔(Commodore Hotel)과 합작으로 설립하였으며 회계제도는 Commodore Group Hotels로부터 도입하였다.

◎ 롯데호텔

일본 Lotte Group에서 전액을 출자하였으며 회계제도는 미국의 회계제도를 영업성격에 맞도록 자체 개발하였다.

◎ 서울 로얄호텔, 세종호텔, 코리아나 호텔, 코오롱 호텔

전문가에 의한 개발과 일본에서 개발한 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호텔들의 회계제도 채택방법이 다르고 기술을 제공한 호텔 또는 출자자를 한 외국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재무제표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작성절차도 달라 호텔산업의 재무제표작성 및 회계처리절차, 계정분류의 방법 등에 대한 통일화된 회계처리지침내지는 회계기준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 2 절 기업회계기준

한국 호텔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업회계기준의 구성을 보면 총칙,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부채의 평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식 및 부속명세서, 보칙 등 총 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1장 제1조 총칙의 기업회계기준 목적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 것처럼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의 목적이라 하겠다. 또한 기업회계기준 제3조 일반원칙중 신뢰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충분성의 원칙 개념은 현재 우리나라 호텔업 회계제도상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제3장 제35조)을 보면 실현주의, 수익비용 대응의 기준, 총액표시의 기준, 구분표시의 기준이 있는데, 위의 “구분표시의 기준”중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업종별 특수성을 띠고 있는 기업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²³⁾

이는 업종별 회계에 대하여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이 어느 정도 자의적 회계표시를 정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겠다. 또한 위의 수익·비용 대응의 기준은 호텔 부문별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의 대응 필요성 및 이론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호텔업이 한국내에 존재하는 한 세법의 적용을 받는 세무회계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과세표준의 신고조항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 장부의 비치, 기장의 의무조항에서는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을 따르지 않는 회계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제 3 절 미국호텔회계제도(USAH)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20년에서 대공황에 돌입하는 1929년까지의 미국의 경제는 주식회사제도에 의한 기업의 발달로 호경기였는데, 이때 호텔건설의 붐을 타고 많은 호텔이 생겨나면서 규모가 확대됨과 동시에 그 기업활동을 기록하는 절차도 복잡하게 되었으며 호텔업의 사회적 공공성도 강하게 되었다.

한편, 호텔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도 점차로 증대하게 되었으며 그 기업의 실태와 업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미국호텔회계제도통일준칙(Uniform System of Accounts for Hotels : 이하 미국호텔회계제도라 칭함)의 초판은 1925년과 1926년초 사이에 뉴욕호텔협회(Hotel Association of New York City)의 요청으로 회계사들에 의해

23) “기업회계기준의 법률적 체계”, 「월간 정리」, Vol.17 No5, 1993, p.5.

만들어졌다.²⁴⁾

1925년 뉴욕의 호텔협회는 호텔회계사위원회(Committee of Hotel Accountants)를 설치하여, 호텔의 있어서의 수입·비용·자산·부채·자본의 분류가 통일되도록 재무적 자료를 분류·조직·제시하는 제도를 고안하고 비교 가능한 재무제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26년 3월에 그것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출판하게 되었으며, 그후 이 제도는 미국호텔 및 모텔협회(American Hotel and Motel Association)에 의해 채택되어 비로서 “미국호텔회계제도(Uniform System of Accounts for Hotels)”로 알려지게 되었다.

뉴욕호텔회계사협회는 “Uniform System of Accounts for Hotels”의 첫 규정(manual)을 펴낸후 규정제도위원회(Manual Committee)를 결성하여 규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현재는 제8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1986년 제8차 개정은 국제숙박경영인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ospitality Accountants)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때 영국숙박경영인협회(British Association of Hospitality Accountants)등의 회계단체의 자문을 구하였다.

이 제도는 호텔업이 가지는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대부분 흡수하고 또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호텔회계의 성서”라고 불리는 호텔회계의 기준이다.

미국에서는 이외에도 소규모 호텔을 위한 통일된 회계제도, 클럽(club)을 위한 통일된 회계제도 및 레스토랑을 위한 통일된 회계제도 등이 1980년대에 출현하게 됨으로써 각 업종별 회계제도가 제각기 특성을 갖고 마련되었다.

USAH의 회계제도 내용을 보면 미국호텔회계제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24) William S. Gray and Salvatore C. Liguori, *Hotel and Motel Management and Operation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 Hall, 1980, p.189

영업부문과 비용부문으로 영업부문은 직접 수입(Revenue)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개별손익계산서 작성이 가능하고, 이에 비해 비용부문은 다시 몇 개의 부문으로 구별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부속명세서와 구분에 대한 내용과 정의 각 부문의 수입과 비용항목에 대한 적용 등을 표시하고 있다.

1. 영업부문(Operated Departments)

호텔의 영업에 의해 얻어지는 각종의 수입형태를 표시하고 있는데 호텔마다 다양하나 보통 객실부문, 식음료부문, 전화부문, 세탁부문, 주차장부문 등이며 호텔영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영업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구분해서 나타낼 수도 있다.

미국호텔회계제도의 제8차 개정에 의하면 전체 영업부문을 Rooms, Food and Beverage, Telephone, Garage and Parking, Guest Laundry, Golf Course, Golf Pro Shop, Tennis-racquet Club, Tennis Pro shop, Health Club, Swimming Pool-Cabanas-Baths, Other Operated Departments, Rentals and Other Income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속명세서로서 부문별 손익계산서를 작성,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영업부문중에서 식음료부문은 식료와 음료를 구분하여 둘 수도 있고 식음료로 하여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사실상 이 둘은 서비스상 너무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정확히 구별짓기가 곤란하므로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단일의 부문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업부문은 필요에 따라서 늘려 갈 수 있는데 우리 나라의 호텔기업의 경우에도 부대영업부문을 두고 있다. 단, 호텔의 영업부문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독립된 하나의 업종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은 경우에는 호텔 영업부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실제로 미국호텔회계제도의 제8차

개정판에서 카지노 부문은 그 사업성이 단독기업으로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 부문을 제외시키고 있다.

2. 비용부문(Overhead Departments)

미국호텔회계제도는 각 부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부문에 부과되어야만 하는 다음과 같은 비용항목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 ① 일반관리비(Administrative and General)
- ② 자료처리비(Data Processing)
- ③ 인력자원비(Human Resources)
- ④ 차량유지비(Transportation)
- ⑤ 마아케팅(Marketing)
- ⑥ 고객접대비(Guest Entertainment)
- ⑦ 수도광열비(Energy Costs)
- ⑧ 자산운영 및 유지비(Property Operation and Maintenance)

3. 미국호텔회계제도의 도입적용의 문제점

미국의 호텔회계제도를 도입하여 그 제도를 우리 나라 호텔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리 나라 주요 특급호텔은 이 제도를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정확한 기준이 없고 조직적인 체계도 미흡한 형편이다. 직접 미국의 호텔회계제도를 도입, 적용할 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 (1) 매출액과 수입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호텔회계제도는 수입의 범위를 정상적인 본래의 영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영업외수익까지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적용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영업 본래의 목적에 상응하는 수입만을 매출액의 범위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순이익은 같은 계산이 된다 하여도 그 과정은 많은 차이점이 있다.

(2) 미국의 호텔회계제도와 조직이 다르다.

우리 나라의 호텔은 조직에 있어서 총지배인의 위치가 미국 호텔의 총지배인의 위치와 다르다. 우리 나라 호텔의 조직에 따르면 총지배인은 영업을 담당하는 상무 또는 전무의 위치로서 영업에 대한 책임과 영업행위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운영이나 영업정책 등에 대한 결정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은 호텔의 조직부터 개편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3)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곤란하다.

채권자, 채무자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이해가 곤란하며 호텔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4) 정책의 공공기관 등이 그 제도의 적용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미국의 호텔회계제도에 대한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승인없이 호텔이 그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상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제 4 절 기업회계기준과 미국호텔회계제도(USAH)의 비교

1. 기본 재무제표의 종류 비교

USAH와 기업회계기준상의 기본재무제표를 비교해 보면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USAH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소유주(주주)지분변동표, 재무상태변동표, 현금흐름표 5가지를 기본재무제표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4가지의 기본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기본 재무제표의 비교

USAH	기업회계기준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소유주(주주)지분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변동표	

또한, USAH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모두 재무제표를 당해년도분과 직전년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 재무제표중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는 두 기준 모두가 요구하는 동일한 내용을 담는 재무제표이다. 국제증권위원회기구(IOSOC)의 회의(1993년)에서도 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흐름표의 도입을 결의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화추세에 발맞추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94년 4월 개정안에서 재무상태변동표를 당기의 비영업요소와 영업요소의 현금흐름을 보고한다는 점에서 재무상태변동표와 구분되는 점은 있으나 성격이 같은 현금흐름표로 대체하였다.

USAH상의 소유주지분명세서(Statement of shareholders' equity)는 회계기간 동안의 총소유주지분(자본)의 변동상황을 나타내주는 재무제표이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기업의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과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의 총변동사항을 나타내 주는 회계보고서이며,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이 있을 경우 이의 처리내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그

러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소유주 지분중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사용(처분)하였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나 USAH상의 소유주지분명세서는 기초시점의 자본이 기말시점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나타내주는 재무제표로서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항목(예: 자기주식) 등 모든 소유주지분 계정의 증·감 변동사항을 제시해 주는 회계보고서이다.

기본 재무제표중에서 두 기준에 의한 작성시 가장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손익계산서이다. 그 이유는 기업회계기준은 주로 제조업·판매업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정임에 반하여 USAH는 호텔기업이라는 특수산업을 대상으로 한 회계기준이기 때문이다.

2. 대차대조표 작성상의 차이점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계산서이며 재무상태표라고도 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총괄한 표이다. 대차대조표의 작성에 있어서 USAH와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을 자산항목과 부채항목 및 자산항목의 구분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자산항목의 구분 차이점

USAH는 자산을 유동자산·장기채권·유형고정자산·기타자산으로 대분류하나, 기업회계기준은 유동자산·고정자산으로 대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항목의 구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USAH에서는 유동자산을 현금과 예금·유가증권(marketable securities)·매출채권(receivables)·재고자산(inventories)·선급비용·기타유동자산으로 분류하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동자산을 당좌자산·재고자산

으로 구성하고 있다. 당좌자산(quick assets)도 기업회계기준상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단기금융상품·유가증권·매출채권·단기대여금·미수금·미수이익·선급금·선급비용을 포함하나, USAH에서는 USAH에서는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 매출채권 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USAH에서는 장기채권을 구분·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은 장기성매출채권을 투자자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3) USAH에서는 유형고정자산을 구분·표시하고 무형고정자산은 기타자산에 포함하나 기업회계기준상의 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은 고정자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4)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자산을 장기금융상품·투자유가증권·장기대여금·장기성매출채권·투자부동산·보증금·이연법인세차·기타의 투자자산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USAH에서는 투자자산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투자자산은 대분류하여 구분·표시하거나 또는 이를 기타자산의 기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5) USAH에서는 이연자산(deferred charges)을 기타자산에 포함하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창업비·개발비만을 고정자산의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6) USAH에서는 기타자산이 유동자산·장기채권·유형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계정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기타자산을 창업비·이연자산·기타항목으로 나누고 있다. 반면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타자산 항목을 삭제하고 기타자산에 속하던 계정들을 각 항목으로 분산시켰으며 창업비는 무형자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USAH상의 기타자산은 창업비를 포함한 이연자산·무형고정자산·기업회계기준상의 투자자산을 포함하는 좀더 넓은 뜻의 계정으로 이용되고 있다.

2) 부채항목의 구분 차이점

부채에 관한 이론으로는 회계실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 기업실체 이론(entity theory)과 자본주이론(proprietary theory) 및 자금이론(fund theory)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업실체이론에서는 기업은 그의 소유주와 채권자의 쌍방에서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주주에 대한 지분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보고 부채를 타인자본, 자본을 자기자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본주이론은 자본과 부채를 동질로 보아 부채를 소극적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자금이론은 부채가 자금을 통하여 자산을 구속한다고 보고 있다.

이상에서 부채에 관한 이론을 간단히 비교해 보았으나 부채는 개인 또는 기업외부인에 대한 금전, 재화, 용역을 제공할 의무로서 법률상으로는 회계상으로 엄연히 자본과 구별해야 한다. 부채란 법적으로는 기업이 부담하는 금전적 채무, 물건의 인도의무 및 용역제공의무 등 확정채무 이외에 조건부 채무로서의 퇴직금지급의무, 미확정된 채무로서의 미지급세금 등이 부채에 속한다. 이런 부채를 USAH에서는 유동부채·고정부채·기타장기부채·이연법인세·위약 및 우발채무(comitments and contingencies)로 대분류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은 유동부채·고정부채로 대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1년 기준(one year rule)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부채 항목의 구분에 있어 두 기준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장기선수수익에 대한 계정과목 분류의 차이점이다. 선수수익이란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하여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아직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수익중 차기이후에 속하는 금액을 기록하는 계정이다. USAH에서는 1년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연된 보상금·경영수수료 등을 기타장기부채(other long-term liabilities)로 기록하도록 요구하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선수수익을 유동부채로 구분·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89년 3월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연부채항목을 삭제하고 장기선수수익은 고정부채로 분류하도록 하

였으나 90년 3월 개정안에 유동부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98년 12월 개정안에서 선수수익은 유동부채로 분류하였다.

(2) USAH에서는 우발채무를 대차대조표상에 금액은 나타내지 않아도 그 내용은 각주(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로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우발부채²⁵⁾로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우발부채는 현실적으로는 미확정일지라도, 회계상 채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채 또는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 확정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있어야만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우발손실에 따른 채무를 부채로 인식할 것인가의 판단기준으로 우발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확실함과 금액의 합리적인 추정 가능성을 들고 있으나, USAH에서는 2가지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3)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고정부채의 설정과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USAH에서는 구체적인 설정과목을 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각주로 나타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자본항목의 구분차이

자본(capital stockholders' equity)이란 회계적으로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로서 측정되고 그 성격도 자산과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설명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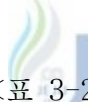
소유자지분(owners' equity, ownership equities)은 오늘날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유자지분은 투자자가 기업의 자산에

25) 기업회계기준(제74조) 우발상황(Contingency)이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대하여 가지고 있는 청구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소유자지분항목의 구분·표시에는 USAH에서와 기업회계기준에서 별로 차이가 없다. 즉 자본은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러나 USAH에서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조합기업(partnership),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법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제33조)에서는 자본의 조정항목으로 자기주식(treasury stock)뿐만 아니라 주식할인발생차금(discounts on stock issued)과 배당건설이자(prepaid dividends during pre-operating periods)까지도 규정하고 있으나, USAH에서는 자기주식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USAH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 작성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을 요약하면 다음 <표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 3-2> 대차대조표 작성의 차이점 비교

항 목	U S A H	기업회계기준
1. 자산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자산 - 장기채권 - 유형고정자산 - 기타자산 <li style="padding-left: 20px;">개업비 <li style="padding-left: 20px;">이연자산 <li style="padding-left: 20px;">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자산 <li style="padding-left: 20px;">당좌자산 <li style="padding-left: 20px;">재고자산 - 고정자산 <li style="padding-left: 20px;">투자자산 <li style="padding-left: 20px;">유형자산 <li style="padding-left: 20px;">무형자산
2. 부채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부채 - 고정부채 - 기타장기부채 - 이연법인세 - 위약 및 우발채무 (금액미기록, 주석에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부채 - 고정부채

항 목	U S A H	기업회계기준
3. 자본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주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이익잉여금 - 차감항목 <li style="padding-left: 20px;">자기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주자본금 - 우선주자본금 - 자본잉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자본조정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미교부주식배당금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해외사업환산대
4. 기업형태 (자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조합기업, 개인기업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를 대상
5. 대차대조표 재무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으로 계산된 주요 재무비율을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3. 손익계산서 작성의 차이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Statement of Profit and Loss)는 일정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요약하여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킴으로써 계산된 순이익 또는 순손실을 표시한 보고서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기업이 어느 정도 재무적인 성장을 이룩했는가를 나타내며 또한 손익활동에서 생긴 순자산이 변화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손익계산서가 보다 유용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의 결과인 기업의 순가치 변동액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영업활동의 과정과 내용까지도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한다.

USAH와 기업회계기준이 동일한 손익계산방법을 갖는다면, 수익 및 비용

항목에 대한 구분이 다르다 해도 궁극적인 당기 순이익의 계산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USAH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USAH에서는 손익계산서와 영업부문별 손익계산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영업부문별 손익계산서는 호텔의 각 업장별로 구분하여 수익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충적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 규정하고 있다.

USAH에서는 손익계산서를 전기와 당기의 비교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영업부문별 손익계산서를 당기의 영업성과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를 전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USAH와 기업회계 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의 차이점을 손익계산서와 영업부문별 손익계산서로 나누어서 검토하기로 한다.

1) 손익계산서 작성의 차이

(1) 구분표시

USAH는 개별영업부문(operating department)의 수익(revenues)을 모두 합하고 여기에 영업외수익(rentals and other income : 이를 임대 및 기타수익으로 기록하기도 한다)을 합하여 총수익을 구하고 개별영업부문의 개별비용과 미배분영업비용(undistributed operating expenses)과 영업외비용(fixed charges)을 합한 총비용(total costs and expenses)을 구한 후 총수익과 총비용의 일괄대응에 의해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income before income taxes)을 구하게 된다.

이에 반해 기업회계기준(제35조 2항)에서는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이 단계적 대응의 과정을 통하여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USAH의 손익계산서는 총괄손익계산서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은 구분손익계산서라고 할 수 있다. 총괄손익계산서는 단일구분손익계산서라고도 하는데 1회계기간의 각 수익·비용항목을 아무런 구분표시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 방법은 작성하기는 간편하나 손익계산서의 중요한 기능인 수익·비용의 연관성과 대응관계가 명료하지 못한 결점이 있다. 구분손익계산서는 1회계기간의 수익·비용항목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수익·비용을 대응 표시하는 방법이다.

(2) 부문별계산

USAH에서는 수익을 개별영업부문인 객실부문, 식음료부문, 전화부문 등의 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며, 비용은 영업부문별 개별비용(직접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미배분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은 비용항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또한 보충정보로서 개별영업부문의 손익계산서와 미배분영업비용이 발생하는 서어비스부문의 비용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제40조)에서는 부문별계산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업의 자의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3) 손익계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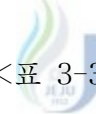
기간손익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기간수익에 대응하는 기간비용을 계산하게 된다. 이때 기간수익과 기간비용에 포함될 수익, 비용의 성질 및 내용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기간손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문제로서 일찍이 커다란 관심사가 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임시적이고 이상적인 손익항목을 기간수익 또는 기간비용에 포함해서 기간손익을 확정하는 포괄주의(allinclusive concept, clean surplus concept)와 임시적이고 이상적인 손익항목을 제외하고 기간손익을 확정하는 당기업적주의(current operating performance concept)가 대립되어 왔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종래의 포괄주의에 의한 손익계산방식을 일부 수정

하여 경상이익에 특별항목의 이익을 가감하는 형식을 취하고 전기손익수정 손익항목은 이익잉여금의 조정항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포괄주의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포괄주의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포괄주의가 당 기업적주의에 의한 손익과 포괄주의에 의한 손익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신포괄주의 또는 절충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반면에 USAH에서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결과로 인한 수익과 비용만을 이용한 손익계산서 형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상적·비정상적 결과인 특별손익 및 전기손익수정손익항목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당기업적주의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USAH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 작성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을 표로 요약하면 <표3-3>과 같다.


<표 3-3> 손익계산서 작성의 차이점 비교

항 목	U S A H	기업회계기준
1. 구분표시	- 총수익과 총비용의 일괄 대응을 통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계산	- 수익과 비용의 유형별 구분을 통한 단계적 대응으로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의 구분 계산
2. 부문별 계산	- 수익은 12개 영업부문과 영업외수익으로 구분하여 수익항목에 표시 - 비용은 영업부문 개별 비용을 구분·표시하고, 미배분 영업비용과 고정비용은 원가항목별 구분하여 표시 - 각 영업부문명세서서비스부문의 비용 명세서 및 고정비용명세서 등의 보충정보를 제출 요함	- 부문별 계산이 전제되지 않음
3. 손익계산방법	- 당기업적주의(유추)	- (신)포괄주의

2) 영업부문별 손익계산서 작성의 차이

(1) 부문별 계산

호텔업에서는 영업부문간의 수익과 비용의 분석이 매우 필요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호텔들은 부문화(departmentalization)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호텔 부문화의 기준으로는 기능, 서어비스, 지역, 고객, 공정 등이 이용될 수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기능과 서어비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규모 호텔들은 기본적인 수익의 획득 원천이 되는 영업부문과 영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영업부문은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을 얻기 위한 원가 또는 비용의 발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이익중심점(profit center)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USAH에서는 수익창출의 원천이 되는 영업부문의 부문성과를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영업부문의 부문개별수익과 부문개별비용의 대응을 통해 부문순익을 계산한다.

USAH는 영업부문 손익계산을 위하여 객실, 식음료 등 12가지의 영업부문의 손익계산 과정을 부문별손익계산서로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개별영업부문손익과 영업외손익을 합하여 총영업부문손익(total operating departments)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제40조)에서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업의 자의에 맡기고 있다.

USAH의 영업부문 손익계산은 부문총수익(total revenue: 또는 총매출액)에서 수익조정액을 차감하여 부문순수익(net revenue : 또는 순매출액)을 계산하고 부문개별비용(임금 및 급료, 후생복지비와 기타비용)을 차감하여 부문순익(departmental income or loss)을 계산하게 된다.

(2) 구분표시

USAH의 영업부문별 손익계산서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은 모두 구분식손익계산서의 형식을 취하며, 손익의 발생 요인이 영업활동의

결과인지 아니면 비영업활동에 의한 결과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의 계산과정과 용어에 있어서 양기준간에는 차이가 있다. USAH에서는 이익을 총영업부문의익·위탁경영수수료 및 고정비용차감전순손익·법인세차감전순이익·당기순이익으로 구분하여 이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손익을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있다.

(3) 매출원가 및 매출총손익의 계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의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매출총손익을 계산하여, 업종별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구분·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매출총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매출총손익계산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손익계산의 제1단계이며 매출액이 매출원가를 초과할 때는 매출총이익이 되고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초과할 때는 매출총손실이 된다. 이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대응시키는 것이 무의미한 업종에 대하여는 구태여 인위적으로 매출원가를 구분하여 대응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어비스업 등 인적용역에 의하여 수익을 획득하는 업종은 인건비를 제외한 뚜렷한 원가가 있을 수 없으므로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를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출총이익구분계산을 생략하고 다음 구분단계인 관리비를 직접 매출액에 대응시킴으로써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 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제40조 4항)에서는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USAH에서는 식음료 부문과 전화부문 등 몇 개의 영업부문만이 부문매출총이익(gross profit)을 계산하고 있고 호텔전체의 성과계산시에는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영업외수익의 기록

USAH에서는 12개의 영업부문의 손익계산과 더불어 영업외수익을 영업 부문에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총영업부문 손익계산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성과계산시 영업외수익을 영업부문손익과 구분하여 표시하기는 하나, 영업비용과 대응시키는 과정에서 영업수익뿐만 아니라 영업외수익까지 포함시킨 총수익과 영업비용을 대응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구분하여 표시할 뿐 아니라 영업비용에는 매출총손익만을 대응시켜서 영업손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5) 수익의 용어차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수익은 매출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영업외수익에서는 수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USAH에서는 부문별 수익이라는 항목으로 영업수익 즉, 부문별매출액을 표시하고 있으나 매출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USAH에서 매출액이라는 용어 대신에 영업수익을 수익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이유는 호텔에서의 수익은 일반적으로 식음료판매액, 객실판매액, 투자에 대한 이자 및 배당금 그리고 임대수입을 포함하기 때문일 것이다.

‘revenue’는 통상 ‘수익’으로 실무에서는 ‘수입’이란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다. 통상 수입은 현금, 예금 등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출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또한 수입에 대하여는 어떠한 급부가 인도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회계상 수입이 반드시 수익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입이 전반적으로 그 기간의 손익에 관계가 있으면 수익적 수입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를 자본적수입이라고 한다. 따라서 회계용어의 통일을 위해서는 ‘수익’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6) 판매비와 관리비의 용어

기업회계기준(제42조)에서의 영업손익은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제43조)에서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

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판매비와 관리비는 그 내용면에서 많은 다른 성질의 비용으로 구분되어 있어 한마디로 비용구성을 설명할 수 없으나 기업회계기준은 이를 12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에 USAH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용어 대신에 ‘미배분영업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항목에는 관리비, 자료처리비 등 8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이는 영업부문에 용역을 제공하는 서어비스부문에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미배분영업비용에 포함되는 8개 항목은 기업회계기준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과 유사하다.

USAH에서는 총영업부문손익에서 미배분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위탁경영수수료와 영업외비용차감전이익을 계산하고 있다.

(7) 위탁경영수수료의 기록

위탁경영수수료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적인 경영기술을 제공하는 호텔(chain operating company)에 지급하는 보수를 말하는데, USAH에서는 이 위탁경영수수료를 ‘위탁경영수수료와 영업외비용차감전순이익’ 다음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하거나 영업외비용에 포함시켜 표시토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위탁경영수수료에 대한 항목은 없으나 이 항목의 성격상 관리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

(8) 고정비용계정

고정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에선 주로 금융비용이 포함된다. USAH에서는 고정비용에 지급이자 등의 금융비용뿐만 아니라 지

급임차료(rent), 법인세이외의 체세금, 건물 및 부속설비의 보험료, 감가상각비(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등의 점유비용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은 영업외비용이나, USAH에서 고정비용으로 분류된 점유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시켜 영업비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9) 특별항목의 기록

특별항목은 임시적이고 이상적인 항목으로서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을 포함하며, 이는 비정상적이고 우발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들 특별손익을 정상적인 손익과 구별함으로써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정상적 손익의 발생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어느 손익항목이 특별항목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무관한 극히 비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것 이어야 한다.

USAH는 기본적으로 당기업적주의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특별항목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유형자산처분손익이 중요한 경우에는 법인세차감전이익 계산전에 구분·기록하고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외수익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별항목을 정상손익 계산후 특별이익으로 표시한 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USAH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부문별 손익계산서 작성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을 표로 요약해보면 <표 3-4>와 같다.

<표 3-4> 부문별 손익계산서 작성의 차이점 비교

항 목	U S A H	기업회계기준
1. 부문별 계산	- 부문별 성과를 나타냄	- 언급이 없음
2. 구분 표시	- 총영업부문의익·경영수수료 및 고정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차감전순이익·당기순이익으로 구분계산	-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당기순손익으로 구분계산
3.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 계산	- 6개의 영업부문손익 계산시 매출원가가 나타나며, 이때의 매출원가는 부문의 재료원가 또는 상품구입원가에 의하여 계산됨 - 호텔기업전체의 매출원가는 6개영업부문 매출원가의 합계액으로 계산가능하나, 매출총이익은 계산하지 않음	- 매출액 :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로 매출총손익을 계산 - 호텔기업의 경우는 매출총이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해도 무방함(제35조)
4. 영업외수익의 기록	- 영업부문수익란에 임대 및 기타수입으로 기록	- 영업외수익은 영업수익과 구분하여 영업손익 계산후에 기록함
5. 판매비와 관리비의 범위	- 미배분영업비용으로 기록 - 이는 영업부문에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한 비용임	- 판매활동관련 : 판매비 일반활동관련 : 관리비로 기록함
6. 영업손익	- 경영수수료 및 고정비용 차감전순이익의 계산을 하고 영업이익 계산은 하지 않음	-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계산함
7. 경영수수료	- 구분·표시하거나 고정비용에 포함시킴	- 관리비에 포함시킴
8. 고정비용 포함항목	- 금융비용과 점유비용(지급입차료·제세금·건물 및 부속설비의 보험료·감가상각비 등)을 고정비용에 포함시킴	- 금융비용은 영업외비용에, 점유비용은 관리비(또는 매출원가)에 포함 시킴
9. 특별항목의 표시	- 특별한 설명이 없으며, 단지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계산전에 기록하거나 영업외수익에 포함시키도록 함	- 경상손익 계산후 특별이익을 구분·표시함(특별손실은 특별이익에 통합)

(3) 현금흐름표상의 차이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 재무제표이다.

USAH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를 기본 재무제표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USAH상의 현금흐름표는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상의 현금과 예금을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변동표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으나 94년 4월 기업회계기준개정안에서는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USAH의 현금흐름표는 기업회계기준의 직접법현금흐름표의 형식과 같고 USAH의 재무상태변동표는 기업회계기준의 간접법현금흐름표의 형식과 같다.

USAH에서는 별도의 고정비용항목(임차료·세금·보험료·지급이자)을 신설하여 영업에 의한 현금에서 고정비용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별도의 항목을 두지 않는다.

USAH와 기업회계기준의 현금흐름표는 형식과 내용면에서의 차이점은 호텔기업과 일반기업의 차이점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차이

기업의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과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의 총변동사항을 나타내 주는 회계보고서로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당기말 미처리결산금이 있을 경우 이의 처리내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인 반면 USAH의 소유주지분명세서는 기초시점의 자본이 기말시점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나타내 주는 재무제표로서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항목(예: 자기주식) 등 모든 소유주 지분계정의 증감 변동사항을 제시해 주는 회계보고서이다.

제 4 장 제주지역 호텔의 회계처리 실태분석

제 1 절 관광호텔의 현황

1. 국내관광호텔의 현황

국내 호텔의 추세는 과거 개인소유의 소규모 호텔에서 대그룹의 계열사로 단일호텔중에는 1,000실 이상의 객실규모를 가진 업체도 등장할 만큼 그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호텔기업의 대형화, 고급화 추세이고 호텔업의 공익성부문도 부각되기 시작함에 따라 다양한 회계정보이용자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표 4-1> 지역별/등급별 관광호텔 현황

지역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미정	업체수
서울	15	16	31	24	19		105
부산	5	3	13	13	21	4	59
대구		3	14	8	1		26
인천		2	5	2	1		10
광주		2	7	1			10
대전		3	9	11	3		26
울산		2		3	1		6
경기도		2	25	14	4		45
강원도		9	13	2	4		28
충청북도		1	16	2	3		22
충청남도		1	4	5	1		11
전라북도		3	4	8	2		17
전라남도			6	4	4		14
경상북도	5	2	15	10	9		41
경상남도		4	13	7			24
제주도	9	5	15	6	6		41
합계	34	58	190	120	79	4	485

한국관광협회에서 발행한 2001년판 관광사업체명부를 지역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전국의 관광호텔 현황을 보면 <표 4-1>과 같다.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말 현재 국내호텔현황을 보면은 서울 21.6%, 부산 12.2%, 경기 9.3%, 제주도 8.5% 관광호텔로 등록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2. 제주지역 관광호텔 현황

제주지역의 관광호텔은 총41개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 제주지역 관광호텔 현황 <>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제 주 시	4	3	10	4	3
서귀포시	5	2	3	1	2
북제주군			2	1	
남제주군					1
합 계	9	5	15	6	6

제 2 절 실태조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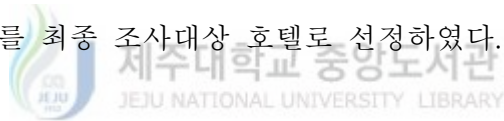
1. 표본의 선정

한국관광협회에서 발행한 2001년판 관광사업체 명부를 살펴보면 특1등급

9개, 특2등급 5개, 1등급 15개, 2등급은 6개, 3등급은 6개업체로 총 41개업체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명부에는 최근에 영업을 하지 않는 1등급호텔 3개업체가 수록되어 있어 1등급호텔을 12개업체로 수정을 보아 38개 호텔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2년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특1등급 관광호텔 2개, 특2등급 관광호텔 2개, 1등급 관광호텔 2개, 2등급 관광호텔 2개, 3등급호텔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등급과 3등급의 경우에는 단순히 경리업무만을 호텔내부에서 행하고 재무제표작성 업무 등은 외부의 회계사무소나 세무서에 의뢰하고 있어 조사대상호텔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제주도의 호텔회계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특1등급호텔 9곳, 특2등급호텔 6곳, 1등급호텔 12곳 등 모두 26개 업체를 조사대상호텔로 선정하였으나, 면담 및 설문지 회수가 어려운 1등급호텔 2개업체를 제외하여 모두 24개업체를 최종 조사대상 호텔로 선정하였다.



2. 실태조사 설문의 이론적 접근

제주지역 호텔 회계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구성을 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미국의 통일된 호텔회계제도(USAH)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주된 사항으로 추출하였다.

1) 외상매출금 계정 측면

외상매출금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며, 신용거래 결과로 생긴 신용채권으로서 유동자산의 대표적인 계정이다.

우리나라 호텔업의 경우 타산업보다 신용거래 발생율이 높다.

따라서 호텔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신용거래로 발생한 신용채권을 모두 외상매출금으로 계상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 재고자산의 세분화와 구분방법 측면

기업회계기준상의 유동자산은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당좌자산과 작업 또는 판매의 대상이 되는 재고자산, 단기대여금, 선급금, 미수수익 등과 같이 회수기한이 1년이내인 기타의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것, 그리고 판매에 이용될 재화나 용역을 생산함에 있어 소비될 유형의 동산을 포함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제15조)에서는 재고자산을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세분하고 있다.

그러나 호텔업의 재고자산의 67%가 식음료 재고로서 식음재고의 대부분이 진부화 속도가 빠른 부패성자산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며, 구매, 검수, 저장, 조리, 판매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분류(제조기업체 중심)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집기 비품계정의 설정 측면

호텔업의 집기 및 비품에는 식당 및 주방용품과 냉장고, 객실용의 의자, 탁자, 커어텐, 카펫트, 객실용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도 포함되고 또한 객실에 설치된 냉장고 및 전화기류와 사무실의 의자와 탁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중에서 식당 및 주방용품으로는 주로 도기, 유리, 은제 등이고 객실용의 커어텐과 카펫트 등은 직물류 또는 린넨(Linen)이며, 그외 나머지는 비품이라고 할 수 있다.

호텔업의 집기와 비품에는 법인세법상의 고정자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의 품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4) 업장별 매출액의 구분 표시 측면

기업회계기준(제40조)에서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것은 강제하지 않고 각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호텔들은 기본적인 수익의 획득원천이 되는 영업부문과 보조부문(service department)으로 되어 있는데, 영업부문은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을 얻기 위한 원가 또는 비용의 발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이익중심점(profit center)으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익중심점으로서의 영업부문은 부문화와 더불어 분권화(decentralization)한 유형으로서, 호텔영업부문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의 위양정도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처럼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5) 업장별 매출원가의 구분 표시 측면

기업회계기준(제35조 2·3항)상의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은 수익이 그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초과할때에 생긴다.

이때 수익 비용의 대응은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된 수익과 비용을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을 수익 비용의 대응원칙이라고 한다.

또, 손익계산서에서는 모든 비용 또는 모든 수익을 생략하거나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록 표시하여야 하며 이것을 총액표시의 원칙이라 한다.

기업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 수익 비용의 대응원칙, 총액표시

의 원칙과 구분계산의 원칙에 의해서 작성된다.

호텔업 수익의 획득원천이 되는 영업부문을 구분 표시한다고 할 경우에는 위의 수익 비용의 대응원칙과 총액표시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매출원가의 경우에도 업종별로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

6) 봉사료 수입계정의 측면

봉사료(service charge)는 전 종업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교통부의 지시에 의하여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현재 관광호텔이 봉사료를 기업회계기준의 매출액 수입항목에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설문지의 작성과 조사내용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작성된 설문지의 구성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일반적 사항으로 6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부분은 기본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에 관한 사항으로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부분은 대차대조표에 관한 사항으로 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으로 7개 문항으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설문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3> 설문지의 구성

구 성	내 용	문항번호
I. 일반적 사항	① 호텔의 등급	I 1
	② 객실 수	2
	③ 영업방침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문	3
	④ 호텔업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필요성	4
	⑤ 호텔업 회계처리기준의 적용대상	5
	⑥ 호텔의 현행 회계제도	6
II. 기본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에 관한 사항	① 호텔업에서 작성이 꼭 필요한 재무제표	II 1
	② 필수적 부속명세서 중에서 작성이 불필요한 부속명세서	2
	③ 임의적 부속명세서	3
III. 대차대조표에 관한 사항	① 외상매출금계정의 회계처리	III 1
	②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적용 여부	2
	③ 호텔 특성상 재고자산의 구분방법	3
	④ 집기, 비품 계정의 구분방법	4
IV.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	① 업장별 매출액의 구분표시	IV 1
	② 업장별 매출원가의 구분표시	2
	③ 호텔 특성에 맞는 원가계산기준의 필요성	3
	④ 봉사료 수입의 매출액 포함 여부	4
	⑤ 기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5
	⑥ 간접비용 배분기준 설정의 필요성	6
	⑦ 간접비용 배분기준 활용 여부	7

4.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조사 및 면담의 두가지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설문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설문에 대한 이해, 정확성, 응답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미리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2년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포함되는 표본은 관광호텔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주지역 관광호텔 회계제도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회수된 설문지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제 3 절 실태조사의 결과와 해석

1. 주제별 실태조사의 결과와 해석

1) 조사호텔의 일반적 특성

① 호텔등급별 현황

<표 4-4> 호텔등급별 현황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계
빈도(비율)	9(37.5)	5(20.8)	10(41.6)	24(100.0)

본 연구의 조사대상 호텔의 등급별 구성은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24개의 호텔중 특 1등급 9개, 특 2등급 5개, 1등급 10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 38%, 21%,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② 호텔 등급별 객실수

<표 4-5> 호텔 등급별 객실수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계
객 실 수	2636(60.1)	803(18.3)	950(21.6)	4389(100.0)

호텔등급별 객실수 현황을 보면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1등급은 총 2636실, 특2등급은 총 803실, 1등급은 총 950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각 60%, 18%,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에서 발행한 2001년판 관광사업체명부에 등록된 객실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객실로 등록은 되어있지만 기타의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③ 호텔 등급별 영업방침 중점부문

<표 4-6> 호텔 등급별 영업방침 중점부문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계
객 실	9(100.0)	5(100.0)	9(90.0)	23(95.8)
식음료부문	-	-	1(10.0)	1(4.2)
기 타	-	-	-	-

호텔등급별 영업방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문을 살펴 본 결과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1등급·특2등급 호텔은 모두 객실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1등급 호텔도 객실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호텔업 회계처리기준의 필요성

<표 4-7> 등급별 호텔업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필요성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계
필요하다	8(88.9)	5(100.0)	7(70.0)	20(83.3)
필요없다	1(11.1)	-	3(30.0)	4(16.7)

호텔업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의 질문에 대하여는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호텔을 제외한 20개 호텔(83%)이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제주 호텔업계는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호텔자체내에서 업무제휴 및 회계처리 인력 등 이미 잘 정비된 회계처리기준이 있는 고등급호텔(체인이나 프랜차이즈호텔)들도 기업회계처리 기준과의 상이한 회계처리로 인한 혼란 및 이중업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호

호텔 회계처리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 부산지역에서 필요하다에 응답한 업체는 68%, 대구지역에서는 7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주지역 호텔은 호텔의 특수성을 고려한 회계처리기준 제정 필요성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등급이하 호텔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될 경우 강제적으로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력부족, 정보 생산비용이 증가하므로 덜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호텔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통일된 회계처리기준 제정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호텔업 회계처리기준의 적용대상

<표 4-8> 등급별 호텔업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될 경우 적용대상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계
전체호텔	7(77.8)	2(40.0)	8(80.0)	17(70.8)
특1·2급이상	2(22.2)	3(60.0)	-	5(20.8)
1등급이상	-	-	2(20.0)	2(8.3)

호텔업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할 경우, 그 적용대상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개 호텔(71%)가 전체호텔에 적용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선행연구 부산지역에서 전체호텔에 응답한 업체는 54%, 대구지역에서는 5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주지역 호텔은 전체호텔에 적용되어야 한다가 71%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⑥ 등급별 현행 회계제도

<표 4-9> 등급별 현행 회계제도의 방법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계
특성에 맞게 조정된 회계제도	-	-	-	-
국내회계전문가의 개발	1(11.1)	-	2(20.0)	3(12.5)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적용	6(66.7)	5(100.0)	8(80.0)	19(79.2)
통일된 회계제도에 적용한 조정	2(22.2)	-	-	2(8.3)

현행 호텔 회계제도에 적용하여 쓰는 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호텔중 특1급은 6개, 특2급은 5개, 1등급은 19개 업체로 각각 67%, 100%, 80%로 의외로 특 1·2등급 호텔은 의외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내부보고용은 미국호텔회계제도(USAH)를 사용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제출용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특급호텔의 경우)

선행연구 부산지역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선호한 업체가 60%, 대구지역에서는 59%, 제주지역은 79%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호텔업체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보고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호텔업체는 우리나라내에 존재하는 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제주 호텔업체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하여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2) 기본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는 회계처리 결과를 최종적으로 요약하여 보고하는 소위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이다.

재무보고의 이해관계집단은 주주, 채권자, 종업원, 납품업자 등 대단히 광범위하다.

회사는 이들 이해관계집단이 요구하는 모든 회계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로 하는 공통적인 정보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제공한다.

USAH상의 현금수지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상의 현금·예금에 의한 재무상태변동표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고, USAH상의 소유자지분변동표는 회계기간동안의 총소유자지분의 변동을 나타내주는 재무보고서로서 소유자지분 중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하였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회

계기준상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유사하다.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와 함께 재무제표의 내용을 이해관계자에게 보다 상세하게 보고하는 보조적 재무재표로서 그 기능은 기본재무제표에 못지 않은 중요한 공시자료이다.

기업회계기준(제88조)에서는 반드시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적 부속명세서로서 유가증권명세서, 투자유가증권명세서, 특수관계자간의 채권·채무명세서, 재고자산명세서, 투자부동산명세서, 유형자산명세서, 무형자산명세서, 단기차입금명세서, 장기차입금명세서, 사채명세서, 채무보증명세서, 충당금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 매출액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판매비와 관리비명세서, 감가상각비명세서, 잉여금명세서로 18가지의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재무제표의 표시에 따른 조건부 필요부속명세서 즉, 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명세서가 있으며, 부속명세서 작성을 회사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 부속명세서로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명세서, 매출채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기타의 당좌자산명세서, 투자자산명세서, 투자자산처분명세서, 유형자산처분명세서, 매입채무명세서, 수선비명세서로 9가지의 부속명세서가 있다.

이에 반해 USAH에서는 보충정보로서 부분별 손익계산서를 객실부문, 식음료부문 등 13개와 14개의 서비스부문의 비용명세서와 영업외비용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 USAH에서는 필수적부속명세서와 임의적 부속명세서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부속명세서는 회사의 정보를 모두 상세하게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는 것이지만 특히 임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공시하는 것이 회사의 이윤극대화 에 적합한가는 이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너무 자세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상의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경쟁상대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① 기본재무제표

<표 4-10> 호텔업에서 작성이 꼭 필요한 재무제표

구 분	빈 도	백 분 율
대차대조표	23	95.8
손익계산서	24	100.0
현금흐름표	13	54.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1	45.8
소유자지분변동표	2	8.3
현금수지계산서	6	25.0
합계잔액시산표	9	37.5

제주 호텔업체는 USAH의 기본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소유자지분변동표, 현금흐름표, 현금수지계산서)보다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기본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부산이나 대구지역에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수지계산서 순으로 나타났다.

② 부속명세서

<표 4-11> 호텔업의 특성상 작성이 불필요한 필수적 부속명세서

구 분	빈 도	백 분 율
유가증권명세서	5	20.8
재고자산명세서	2	8.3
투자부동산명세서	6	25.0
유형자산명세서	1	4.2
무형자산명세서	12	50.0
사채명세서	15	62.5
충당금명세서	2	8.3
제조원가명세서	2	8.3
감가상각비명세서	2	8.3
잉여금명세서	4	16.7
특수관계자간의 채권채무명세서	4	16.7

기업회계기준에서 필수적으로 작성이 요구되는 부속명세서 중에서 호텔업의 특성으로 보아 작성이 불필요한 명세서는 사채명세서, 무형자산명세서, 투자부동산명세서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제주 호텔업체는 유가증권명세서, 재고자산명세서, 유형자산명세서, 충당금명세서, 감가상각비명세서, 잉여금명세서, 특수관계자간의 채권·채무명세서가 기업회계기준에서도 필수적으로 사용하듯이 제주 호텔업체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호텔업에 필요한 부속명세서로는 유가증권명세서, 재고자산명세서, 유형자산명세서, 충당금명세서, 감가상각비명세서, 잉여금명세서, 특수관계자간의 채권·채무명세서 등이 호텔 특성상 작성이 꼭 필요한 명세서로 나타났지만 투자부동산명세서, 무형자산명세서, 사채명세서 등은 호텔 특성상 작성이 불필요한 명세서로 나타났다.

③ 임의적부속명세서



<표 4-12> 호텔 특성상 작성이 필요한 임의적 부속명세서

구 분	빈 도	백 분 율
현금 및 현금등가물명세서	16	66.7
매출채권명세서	21	87.5
대여금명세서	5	20.8
기타의 당좌자산명세서	6	25.0
투자자산명세서	2	8.3
투자자산처분명세서	1	4.2
유형자산처분명세서	3	12.5
매입채무명세서	13	54.2
수선비명세서	6	25.0

임의적부속명세서중 호텔 특성상 작성이 필요한 명세서는 매출채권명세서(88%), 현금및현금등가물명세서(67%), 매입채무명세서(54%)로 나타났다.

임의적부속명세서는 호텔업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속명세서이기 때문에 호텔업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3) 대차대조표에 관한 사항

① 외상매출금의 세분화

①<표 4-13> 등급별 외상매출금계정의 구분처리 실태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계
외상매출금으로 처리	-	-	1(10.0)	1(4.2)
외상매출금명세서로 상세 표시처리	6(66.7)	2(40.0)	6(60.0)	14(58.3)
숙박객, 여신부로 구분	3(33.3)	3(60.0)	3(30.0)	9(37.5)

<표 4-14> 등급별 외상매출금계정의 구분처리 의견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계
외상매출금으로 처리	-	-	-	-
외상매출금명세서로 상세 표시처리	6(66.7)	1(20.0)	4(40.0)	11(45.8)
숙박객, 여신부로 구분	3(33.3)	4(80.0)	6(60.0)	13(54.2)

외상매출금계정의 실제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 호텔업계에서는 외상매출금명세서로 상세 표시처리 한다는 응답이 14개업체(58%), 숙박객외상매출금과 여신부외상매출금으로 구분 표시한다는 9개업체(38%)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23개업체(96%)가 구분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무자의 의견으로는 숙박객외상매출금과 여신부외상매출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13개업체(54%)였는데, 선행연구의 부산지역의 실태연구 71%, 대구지역 71%와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 호텔이 구분표시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외상매출금명세서에서 상세하게 표시처리하고 있으므로 부산, 대구지역 호텔보다 수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숙박객외상매출금과 여신부외상매출금으로 구분표시하는 경우 그 기업의 구체적인 영업내용을 외부에 공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호텔업체간의 경쟁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영층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제주 호텔업체는 USAH상의 외상매출금의 구분 표시 규정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재고자산의 세분화와 구분방법

<표 4-15> 등급별 호텔 특성상 재고자산의 구분방법 실태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계
기업회계기준	2(22.2)	1(20.0)	1(10.0)	4(16.7)
식료 음료원재료	1(11.1)	1(20.0)	1(10.0)	3(12.5)
식료 음료 잡화 저장품	5(55.6)	1(20.0)	8(80.0)	14(58.3)
기타	1(11.1)	2(40.0)	-	3(12.5)

<표 4-16> 등급별 호텔 특성상 재고자산의 구분방법 의견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계
기업회계기준	1(11.1)	1(20.0)	1(10.0)	3(12.5)
식료 음료원재료	-	-	1(10.0)	1(4.2)
식료 음료 잡화 저장품	7(77.8)	2(40.0)	8(80.0)	17(70.8)
기타	1(11.1)	2(40.0)	-	3(12.5)

기업회계기준(제15조)에서는 재고자산을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세분화하고, USAH에서는 재고자산을 유동자산에 포함시키고 있고 재고자산에는 식료, 음료재료외 판매되는 기념품(gift), 원재료와 객실과 사무실의 일반용품도 포함하고 있다.

호텔기업의 재고자산의 67%가 식음료재고로서 식음재고의 대부분이 진부화 속도가 빠른 부패성 자산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매(purchasing),

검수(receiving), 저장(storing), 출고(issuing), 조리(preparing), 판매(selling)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는 호텔기업의 재고자산을 어떻게 세분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텔업의 재고자산을 기업회계기준으로 구분 표시하고 있는 곳은 4개업체(17%)로 집계되었으며 식료, 음료, 잡화, 저장품으로 구분표시하고 있는 곳이 14개업체(58%)로 월등히 높았다. <표 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개업체(71%)가 식료, 음료, 잡화 및 저장품으로 구분하기를 원하고 있다. 기타에서는 식료, 음료, 객실상품은 1개업체, 식료, 음료, 저장품은 2개업체로 나타났는데 실제 회계처리와 필요성의 대답은 동일하였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분류는 제조기업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 호텔업체에서는 USAH규정의 재고자산 방법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집기 비품계정의 구분방법

<표 4-17> 등급별 호텔 특성상 집기 비품계정의 구분방법 실태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계
USAH기준	2(22.2)	-	2(20.0)	4(16.7)
기업회계기준	1(11.1)	2(40.0)	6(60.0)	9(37.5)
별도의 기물계정	6(66.7)	1(20.0)	2(20.0)	9(37.5)
기타	-	2(40.0)	-	2(8.3)

<표 4-18> 등급별 호텔 특성상 집기비품계정의 구분방법 의견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계
USAH기준	2(22.2)	1(20.0)	1(10.0)	4(16.7)
기업회계기준	1(11.1)	-	6(60.0)	7(29.2)
별도의 기물계정	6(66.7)	4(80.0)	3(30.0)	13(54.2)
기타	-	-	-	-

등급별 집기 비품계정의 구분방법을 살펴보면 <표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의 기물계정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9개로 전체 호텔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에서는 저장품에 포함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호텔업의 집기 및 비품은 법인세법상의 고정자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의 품목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소액의 기물들을 USAH에서 처럼 가구 및 비품과 도기, 유리, 은제, 린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과 기업회계기준상의 공구와 기구(tool and equipment) 그리고 비품을 구분하는 방법, 별도의 기물계정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제시한 결과 USAH기준에 의한 구분방법보다는 별도의 기물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답한 업체는 <표 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개업체(54%)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별도의 기물계정을 설정하여 표시하는 방법에서는 3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을 호텔업계에서는 제시하였다. ① 가구 및 비품 ② 도기, 유리, 은제류 ③ 린넨류로 세분화 할 것을 제시하였다.

4)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

① 업장별 매출액의 구분 표시

<표 4-19> 등급별 매출액의 업장별 구분 표시 실태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계
모든 업장별 구분	3(33.3)	5(100.0)	4(10.0)	12(50.0)
매출액명세서만	5(55.6)	-	6(60.0)	11(45.8)
구분표시하지 않음	1(11.1)	-	-	1(4.2)
기타	-	-	-	-

<표 4-20> 등급별 매출액의 업장별 구분 표시 의견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계
모든 업장별 구분	4(44.4)	5(100.0)	5(50.0)	14(58.3)
매출액명세서만	5(55.6)	-	4(40.0)	9(37.5)
구분표시하지 않음	-	-	-	-
기타	-	-	1(10.0)	1(4.2)

매출액의 업장별 구분 표시에 관한 실제 처리에 대해서는 <표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업장별로 구분한다에 응답한 업체는 12개업체(50%)이며, 손익계산서상에는 구분하지 않고 매출액명세서에서 구분한다에 응답한 업체는 11개업체(46%)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분하고 있다가 96%를 차지하였다.

기업회계기준(제40조)에서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강제하지 않고 각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 결과 손익계산서 또는 부속명세서 어느 것이든지 매출액을 구분 표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선행연구 부산지역에서는 손익계산서상에는 구분하지 않고 매출액명세서에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한다는 업체가 56%, 대구에서는 7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4-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지역은 38%로 부산, 대구에 비해서 비중이 낮는데 이는 실무에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주지역의 호텔은 부산, 대구지역과는 달리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실제로 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통일회계제도나 호텔기업의 특성에 맞게 독자적인 회계처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업장별 매출원가의 구분 표시

<표 4-21> 등급별 업장별 매출원가의 구분 표시 실태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계
매출원가명세서	6(66.7)	1(20.0)	4(40.0)	11(45.8)
업장별구분	2(22.2)	2(40.0)	3(30.0)	7(29.2)
식료, 음료, 잡화, 기타 등	1(11.1)	-	2(20.0)	3(12.5)
기타	-	2(40.0)	1(10.0)	3(12.5)

<표 4-22> 등급별 업장별 매출원가의 구분 표시 의견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계
매출원가명세서	4(44.4)	-	4(40.0)	8(33.3)
업장별구분	4(44.4)	3(60.0)	3(30.0)	10(41.7)
식료, 음료, 잡화, 기타 등	1(11.1)	-	2(20.0)	3(12.5)
기타	-	2(40.0)	1(10.0)	3(12.5)

등급별 매출원가의 구분 표시에 대해서는 <표 4-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장별 매출원가를 손익계산서상에는 구분하지 않고 매출원가명세서에서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1개업체(46%)이고, 7개업체(29%)는 손익계산서에서 모든 업장별로 구분한다고 응답, 기타에는 구분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4-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익계산서상에서 매출원가를 모든 업장별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10개업체(42%)로 매출액의 구분 표시와 같이 실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보다 필요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제주 호텔업체들은 호텔업에서 식음료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조기업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는 원가회계기준으로도 특수한 업종인 호텔업에서의 적용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③ 호텔업 원가계산기준의 필요성

<표 4-23> 등급별 호텔 원가계산기준제도의 설정 필요성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계
필요하다	9(100.0)	5(100.0)	8(80.0)	22(91.7)
필요없다	-	-	2(20.0)	2(8.3)

호텔 특성에 맞는 원가계산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표 4-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의 호텔업 원가계산기준 제정이 필요하다는에 응답한 업체는 22개업체(92%)가 응답하였다. 이는 선행연구 부산에서는 68%, 대구는 79%가 별도의 호텔업 원가계산기준 제정이 필요하다는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④ 봉사료 수입의 매출액에 포함 여부

<표 4-24> 등급별 봉사료 수입계정의 기재항목 실태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계
매출액 포함	8(88.9)	5(100.0)	8(80.0)	21(87.5)
매출액에 포함 않음	1(11.1)	-	2(20.0)	3(12.5)

<표 4-25> 등급별 봉사료 수입계정의 기재항목 의견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계
매출액 포함	8(88.9)	1(20.0)	4(40.0)	13(54.2)
매출액에 포함 않음	-	4(80.0)	6(60.0)	11(45.9)

현재 실시하고 있는 관광호텔의 봉사료제도는 한국관광협회 주관으로 1979년 6월 9일 세종호텔에서 봉사료제도 실시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고 동년 6월 26일 동협회주관으로 봉사료제도실시에 따른 확대회의를 거쳐 交通部 施設 1530-6828(1979.7.4) 및 동 1530-7694(1979.7.27) 공문에 의하여

1979년 8월 1일부터 전국 관광호텔이 실시하게 되었다.

교통부시설 1530-7694에 의하면 봉사료란 종업원의 봉사대가에 대하여 호텔요금의 일정율을 청구권에 계상하여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이라고 정의하였고, 팁이란 고객이 직접 종사원의 봉사대가에 대하여 임의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봉사료의 징수대상이 되는 수입은 객실료와 식당, 커피숍, 주장(娑) 등에서 판매한 식음료의 대가라 하였으며, 그 대가의 10%를 징수하고 징수 방법은 요금청구서에 계상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징수한 봉사료는 매월 종업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봉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사원의 위생복지와 오락시설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모든 종업원은 팁을 강요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수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봉사료에 대하여 재무부는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음식숙박용역과 함께 받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²⁶⁾ 유권해석함으로써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으로 보았다. 그러나 1984년 10월 5일 공포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에 의하면 동시행령 제48조 제8항을 신설하여 사업자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 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봉사료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선택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봉사료는 전 종업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교통부의 지시

26) 財務部 問稅 1235~2421.

에 의하여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그러한 방법이 고객에 대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도 얻게 되는 것이다.

결국 봉사료란 전액 종업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봉사료 수입을 손익계산서상의 어디에 표시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표 4-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출액에 포함하고 있다고 22개업체(92%)가 응답하였다.

한편 <표 4-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개업체(54%)가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봉사료 수입을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매출액이 적게 표시되어서 주주로부터 경영자의 경영능력이 과소평가 되기 때문에 매출액내에 표시하는 방법을 선호하게 된다. 또 기업주와 경영자가 동일한 소규모 호텔에서는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⑤ 기물의 감가상각방법

<표 4-26> 등급별 기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계
정 액 법	4(44.4)	1(20.0)	4(40.0)	9(37.5)
정 룰 법	3(33.3)	1(20.0)	5(50.0)	9(37.5)
특별상각법	-	3(60.0)	1(10.0)	4(16.7)
기 타	2(22.2)	-	-	2(8.3)

기업회계기준(제62조 3항)상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있다.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상의 고정자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의 기물을 다량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호텔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상의 감각상각법 즉 정액법, 정률법을 선호하고 있다. 기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에 대해서는 <표 4-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액법과 정률법이 각각 38%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소규모 호텔에서는 폐기법이나 갱신법 등 기물계정에 적합한 보다 합리적인 특별감가상각법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 부산에서는 56%가 특별상각법을 선호하였고, 대구는 79%가 특별상각법을 선호한 결과와 비교하면 제주지역 호텔은 특별상각법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로는 타지역에 비해 대규모 체인호텔이 많은 관계로 회계처리업무의 단순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⑥ 간접(공통)비용 기준의 설정 및 활용 여부

<표 4-27> 등급별 간접(공통)비용 배분기준의 활용실태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계
하고 있다.	8(88.9)	2(40.0)	1(10.0)	11(45.8)
그렇지 않다.	1(11.1)	3(60.0)	9(90.0)	13(54.2)

간접비용 배분기준의 활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표 4-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접비(공통비)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활용하고 있다에 11개업체 (46%)가 응답하였다.

이 중 특급 1·2등급 호텔은 자체내에서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배분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13개업체(54%)인데 결과적으로 제주 호텔업계는 내부관리 및 관리회계분야의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표 4-28> 등급별 간접(공통)비용 배분기준 설정의 필요성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계
필요하다	6(66.6)	2(40.0)	6(60.0)	14(58.3)
필요없다	3(33.3)	3(60.0)	4(40.0)	10(41.7)

호텔업은 여러 가지 영업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관리용 원가 계산에서 가장 핵심문제는 성과평가를 위해 불가피한 간접비(공통비) 배분 기준의 설정이다. 영업장의 기간이익의 계산은 간접비(공통비)의 배분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USAH에서는 간접비(공통비)의 영업부분별 배분의 결과를 부분별 손익 계산의 추가 정보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간접비 배분기준에 대해서 <표 4-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지역 호텔업체는 14개업체(5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선행연구 부산에서는 68%, 대구는 71%가 호텔특성에 맞는 간접비 배분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치인데 이는 <표 4-27>에서와 같이 현재 간접비(공통비)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업체가 11개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 4 절 실태조사 요약

1. 제주지역 호텔업 회계처리 실태분석 결과의 요약

1) 호텔업 회계처리기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20개 업체(83%)로 높게 나타났고, 만약 호텔업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될 경우 적용대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호텔이라고 응답한 호텔이 17개 업체(71%)로 나타났다.

2) 현행 회계제도에 대한 질문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는 응답이 19개 업체(79%)로 나타났다.

3) 기본재무제표에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외에도 합계잔액시산표, 현금수지계산서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필수적 부속명세서중에서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속명세서로는 투자부동산명세서, 무형자산명세서, 사채명세서 등으로 나타났다.

5) 임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부속명세서로는 매출채권명세서, 현금 및 현금등가물명세서, 매입채무명세서 등으로 나타났다.

6) 외상매출금계정의 구분처리에서 숙박객외상매출금과 여신부외상매출금으로 구분표시 하여야 한다는에 13개 업체(54%)가 응답하였다.

실제 회계처리에 관한 질문에서는 외상매출금계정에서는 구분 표시하지 않고, 외상매출금명세서에서 상세 표시처리 하고 있다는에 14개 업체(58%)가 응답하였다.

7) 재고자산은 식료, 음료, 잡화, 저장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17개 업체(71%)가 응답하였다. 실제 회계처리에 있어서 식료, 음료, 잡화, 저장품으로 구분 표시하고 있다는 업체는 14개 업체(58%)로 나타났다.

8) 집기 비품계정의 구분방법에서는 유형자산내에 별도의 기물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13개 업체(54%)가 응답하였다.

9)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입장별 구분 표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입장별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매출액은 모든 입장별로 구분하고 있다, 매출원가는 입장별로 구분하지 않고 매출액명세서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0) 원가계산기준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전체호텔 중 22개 업체가 필요하다고에 응답하였다.

11) 봉사료 수입에 있어서는 매출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13개 업체(54%)로 나타났고, 실제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매출액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응답한 업체는 21개 업체(88%)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제주지역 호텔업체 회계처리 실태분석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2. 선행연구(대구, 부산)의 실태분석 결과와 비교

제주지역 호텔업 회계처리 실태분석의 결과와 선행연구(대구, 부산)의 결과를 4개 부문으로 비교하여 살펴본다.

첫째, 일반사항

둘째, 기본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관한 사항

셋째, 대차대조표에 관한 사항

넷째,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이다.

1) 일반사항

<표 4-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지역 호텔업계는 호텔업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20개 업체 83%, 대구는 75%, 부산은 68%가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호텔업계의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9> 일반적 사항 비교

항목	제주 (24개업체)	부산 (24개업체)	대구 (26개업체)
1. 회계처리기준 제정 필요성 - 필요하다	83.3%	68.0%	75.0%
2. 회계기준 적용대상 - 전체호텔 - 특급호텔 이상	70.8% 20.8%	54.2% 33.3%	54.2% 33.3%
3. 현행 회계제도 - 기업회계기준 - 국내회계전문가의 개발 - USAH를 조정한 회계제도	79.2% 12.5% 8.3%	60.0% - 20.8%	59.1% - 21.7%

또한 회계기준을 제정할 경우 그 적용대상을 전체호텔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7개업체 71%, 대구는 54%, 부산의 경우에도 54%로 나타났다.

호텔에서 적용하여 쓰는 회계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업체가 19개 업체로 79%를 차지하였다. 대구와 부산 각각 54%로 나타났다.

2) 기본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표 4-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대구·부산지역의 호텔업계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재무제표, 필수적 부속명세서중에서 작성이 불필요한 필수적명세서, 작성이 필요한 임의적 부속명세서에서는 비율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같았다.

<표 4-30> 기본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관한 사항 비교 호텔

구 분	제주	부산	대구
1. 필요한 기본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100.0%	100%	100%
- 대차대조표	95.8%	100%	100%
- 현금흐름표	54.2%	32.0%	33.3%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5.8%	44.0%	45.8%
- 합계잔액시산표	37.5%	64.0%	66.7%
- 현금수지계산서	25.0%	28.0%	29.1%
2. 불필요한 필수적부속명세서			
- 사채명세서	62.5%	52.0%	62.5%
- 무형자산명세서	50.0%	56.0%	58.3%
- 투자부동산명세서	25.0%	52.0%	54.2%
3. 필요한 임의적부속명세서			
- 매출채권명세서	87.5%	68.0%	70.8%
- 현금및현금등가물명세서	66.7%	68.0%	70.8%
- 매입채무명세서	54.2%	60.0%	62.5%

호텔 특성상 기본적인 재무제표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현금수지계산서로 나타났다. 또 호텔업에 필요한 부속명세서로는 유가증권명세서, 재고자산명세서, 유형자산명세서, 충당금명세서, 감가상각비명세서, 잉여금명세서, 특수관계자간의 채권·채무명세서 등이 호텔 특성상 작성이 꼭 필요한 명세서로 나타났지만 투자부동산명세서, 무형자산명세서, 사채명세서 등은 호텔 특성상 작성이 불필요한 명세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금 및 현금등가물명세서, 매출채권명세서, 매입채무명세서 등도 임의적 부속명세서 중에서 호텔 특성상 작성이 필요한 명세서로 나타났다.

3) 대차대조표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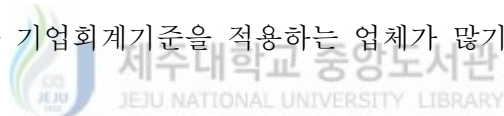
<표 4-31> 대차대조표에 관한 사항 비교

항 목	제주	부산	대구
1. 외상매출금계정 구분처리 - 숙박객, 여신부로 구분	54.2%	70.8%	70.8%
2. 재고자산의 구분방법 - 식료/음료/잡화/저장품 - 기업회계기준 - 식료/음료/원재료	70.8% 12.5% 4.2%	81.3% 18.8%	81.3% 18.8%
3. 집기비품계정의 구분방법 - 별도의 기물계정 - 기업회계기준 - USAH	54.2% 29.2% 16.7%	29.2% 16.0% 60.0%	29.2% 20.8% 50.0%

<표 4-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차대조표에 관한 사항을 보면 대구와 부산의 경우에는 외상매출금계정에서 숙박객외상매출금과 여신부의상매출금으로 구분 표시한다에 54%, 외상매출금계정에서 상

세히 표시한다가 46%로 나타났는데 제주지역의 호텔의 경우에는 숙박객의 상매출금과 여신부외상매출금으로 구분 표시하고 있는 업체가 9개 업체로 38%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호텔은 제주 79%, 대구 59%, 부산 60%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의 분류방법에서는 제주지역은 3개 업체 13%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분류방법은 제조기업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USAH 재고자산 분류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집기 비품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제주지역에서는 유형자산내에 별도의 기물계정을 설정한다에 13개 업체 54%가 응답하였는데 반해 대구와 부산의 경우 각각 50%, 60%가 USAH의 분류방법을 선호하였다. 제주의 경우에는 17%가 USAH의 분류방법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제주지역의 호텔이 대구와 부산지역의 호텔보다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4)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

<표 4-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매출액의 업장별 구분 표시에 관한 질문에서 제주지역 호텔업계에서는 모든 업장별로 구분한다에 응답한 업체는 14개 업체 58%, 손익계산서에서 구분 표시하지 않고 매출액명세서에서 구분한다가 9개 업체 38%로 나타났다. 대구와 부산지역의 호텔업계에서는 매출액을 업장별로 구분 표시한다에 응답한 업체는 각각 29%, 36%이며, 손익계산서에서 구분 표시하지 않고 매출액명세서에서 구분한다에 응답한 업체는 각각 54%, 56%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업장별로 구분 표시하는 방법에, 대구와 부산지역은 매출액 명세서에서만 구분 표시하는 방법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매출원가의 구분 표시에 관한 질문에서도 제주지역의 호텔업계에서는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업장별로 구분 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하였다. 대구와 부산의

<표 4-32>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 비교

항 목	제주	부산	대구
1. 업장별 매출액의 구분표시 - 업장별 - 매출액명세서에서만 구분	58.3% 37.5%	36.0% 56.0%	29.2% 54.2%
2. 업장별 매출원가의 구분표시 - 업장별 구분 - 매출원가명세서에서만 구분	41.7% 33.3%	24.0% 64.0%	25% 66.7%
3. 원가계산기준제도 설정의 필요성 - 필요하다	91.7%	68.0%	79.2%
4. 봉사료수입의 매출액 포함 여부 - 포함 - 포함하지 않음	54.2% 45.9%	36.0% 64.0%	37.5% 62.5%
5. 기물의 감가상각법 - 정 율 법 - 정 액 법 - 특별상각법	37.5% 37.5% 16.7%	16.0% 28.0% 56.0%	20.8% 16.7% 62.5%
6. 간접비 배분기준 설정의 필요성 - 필요하다	58.3%	68.0%	70.8%
7. 간접비 배분기준의 활용 여부 - 하고 있지 않다	54.2%	52.0%	50.0%

경우도 매출액의 구분 표시와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상에서 매출원가를 구분 표시하지 않고 매출원가명세서에서 구분하는 방법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봉사료 수입을 매출액에 포함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제주지역의 호텔업계에서는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가 11개 업체 46%로 나타났는데 대구와 부산의 경우에는 각각 79%, 68%로 나타났다.

기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주지역 호텔업계에서는 정액법과 정률법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38%, 38%, 대구와 부산의 경우에는 특별상각방법이 각각 62%, 56%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대규모 호텔에서는 정액법과 정률법을 선호하고 특별상각법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의 출범과 더불어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행사의 제주유치로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진흥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숙박시설지원 특별법과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한 가운데 국내자본시장의 자유화로 대형화, 고급화, 체인화 또는 직접투자등 다양한 경영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호텔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제주지역 24개업체의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한 회계처리 실태에 대한 분석이다.

호텔기업은 영업내용, 판매형태, 취급되는 상품, 경영면에서 일반기업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회계제도의 적용실태를 보면 기업회계기준, 미국의 통일된 호텔회계제도(USAH), 호텔자체내에서 개발한 회계시스템 등 각 호텔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어 통일화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건설업, 리스업, 증권업, 보험업, 투신업, 종금업, 상호신용금고업의 경우에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되어 있지만, 호텔기업의 경우에는 호텔업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일반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세계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UASH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제주지역 특1·2등급, 1등급 관광호텔의 회계처리 실태를 분석하여, 선행연구(대구, 부산)의 실태분석의 결과와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제주지역의 호텔업 회계처리 실태분석을 다른 지역(대구, 부산)의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제주지역은 특급과 1급 호텔을 조사대상 호텔로 선정하였고 대구·부산은 2급 호텔도 조사대상 호텔에 포함하여 분석을 하여 제주지역

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손익계산서상의 구분 표시, 집기 비품계정의 구분방법, 기물의 감가상각법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나며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손익계산서상의 구분표시를 보면은 제주지역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업장별로 구분 표시를, 대구지역과 부산지역은 손익계산서에서 구분하지 않고 매출액명세서에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집기 비품계정의 구분방법에서는 제주지역의 호텔들은 유형자산내의 별도의 기물계정을 설정을, 대구와 부산지역은 USAH의 분류방법을 선호하였다.

셋째, 기물의 감가상각법에서 제주지역은 정액법과 정률법을 선호하였는데 반해 대구와 부산지역은 특별상각법을 선호하였다.

넷째, 기본재무제표, 필수적부속명세서와 임의적부속명세서에서는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기본재무제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부속명세서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작성이 필요한 기본재무제표는 제주지역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현금수지계산서 순으로, 대구·부산지역은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수지계산서순으로 나타났다.

부속명세서는 제주·대구·부산이 우선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작성이 불필요한 필수적부속명세서는 사채명세서, 무형자산명세서, 투자부동산명세서순으로, 필요한 임의적부속명세서는 매출채권명세서, 현금 및 현금등가물명세서, 매입채무명세서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여 보았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제도의 비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미국호텔회

계제도(USAH) 중심으로 비교하므로, 국가별 또는 호텔(그룹, 체인)별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다른 회계제도는 비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둘째, 실태조사를 제주지역 특 1·2등급 호텔, 1등급 호텔로만 제한되어 있어 여러 등급의 호텔에 대해 폭넓은 실증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셋째, 미국의 통일회계제도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기본재무제표 중심으로 연구함에 있어서 자료상의 한계 때문에 만족할 만한 연구가 되지 못하였다.

이 분야에 대한 제주지역 호텔업의 회계처리 실태를 분석하였다는데 연구의 가치를 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국 내 문 헌

- 강익준, 「관광사업개론」, (서울 : 삼영서관, 1996).
- 김재민, 「관광경영론」, (서울 : 일신사, 2001).
- 김재민 · 신현주, 「현대호텔경영론」, (서울 : 대왕사, 1991).
- 김충호, 「호텔경영학」, (서울 : 형설출판사, 1998).
- 임진섭 · 송성진, 「호텔회계원리」, (서울 : 일신사, 1988).
- 조소윤, 「호텔관리회계론」, (서울 : 기문사, 1995).
- 김정호, “호텔업 회계처리의 실태와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영남대 경영대학원, 1997.
- 김혁수, “한국 호텔업의 회계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1987.
- 문성송, “호텔업 회계처리기준 제정방향에 관한”,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1991.
- 송기철, “한국관광호텔업의 회계처리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 산업경영대학원, 1999.
- 이상철, “한국호텔 회계기준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1997.
- 김영옥, “우리나라 호텔기업 회계기준의 정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1996.
- 서승민, “호텔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의대 경영대학원, 1994.
- 조봉기, “우리나라 호텔업 회계처리준칙 정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문, 안동대학교 경영대학원, 1998.
- 황가익, “호텔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1994.
- 최평윤, “호텔업회계처리기준의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1990.
- _____,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준칙 및 사례집”, 1993.
- _____, “기업회계기준의 법률적 체계”, 『월간경리』, Vol. 17, 1993.
- _____, “관광호텔 회계메뉴얼”, 한국관광협회, 2001.

2. 외 국 문 헌

- 小林薫, 『新ホテル経営入門』, (東京, 1970).
- 山口祐司, 『ホテル管理会計』, (東京: 田書店, 1988).
- 鈴木博, 『近代hotel経営論』, (東京: 紫田書店, 1988).
- 岡本伸之, 『列島ホテル戦争』, (日本: 日本経済新聞社, 1990).
- Eyster, J.J., *The Negotiation and Administration of Hotel Management Contracts*, (2nd ed.). (New York: School of Hotel Administration. Statler Hall, Cornell University, 1980)
- FASB,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 of Business Enterprises*, (Statements, No. 3, 1980).
- William S. Gray and Salvatore C, Liguori, *Hotel and Motel Management and Operation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80)

ABSTRACT

Accounting Practices of Hotel Industry in Cheju

Kwang-Mi Ryu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Joo Le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rvey accounting practices of hotels in cheju area. The study used, as a sample, 24 hotels which consists of 9 extra-deluxe hotels, 6 deluxe hotels, and 10 first-class hotels. The questionnaire used in this survey consists of 20 questions : 3 questio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tels, 3 about hotel 's accounting standard, 3 about financial statements in general, 4 about balance sheet preparations, and 7 about income statement preparations.

The main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 :

First, a majority of the hotels preferred to use the set of financial statements accounting to the Korean Accounting Standards rather than those proposed by the Uniform System Accounting of Hotels(USAH). This is somewhat problematic because the Korean Accounting Standard, although they are useful for the industrial firms in general, are not

specifically geared to hotel industry. Second, a lot of hotels preferred to classify inventories into foods, beverages, supplies, and miscellaneous items. This is somewhat depart from the classification proposed by the Korean Accounting Standards. Third, receivables should be classified in detai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eivable. Fourth, many hotels showed preference on establishing an equipment account included in tangible assets for categorizing furniture and fixtures. Fifth, many hotels showed preference on the schemes of straight line and declining balance by Korean Accounting Standards for determining depreciation of furniture and fixtures. Sixth, many hotels showed preference on dividing sales and cost of sales by a place of business on their income statements.

The summary of comparison with the preceding research on the accounting process of hotel industry in Daegu and Busan is as follows :

First, as for the distinctive description of sales and cost of sales on an income statement, the hotels in cheju area prefer to marking the figures on income statement by a place of business while the hotels in Daegu and Busan would mark them respectively on their schedule of sales and schedule of cost of sales instead of income statement. Second, as of categorizing the account of furniture and fixtures, the cheju-based hotels would establish a different equipment account included in tangible assets whereas the Daegu and Busan-based hotels would select the Uniform System Accounting of Hotels(USAH) scheme according to the previous research. Third, as for depreciation of furniture and fixtures, the cheju-based hotels would take the schemes of straight line and declining balance, however, as revealed by the preceding research, the

Daegu and Busan-based hotels would take extraordinary depreciation scheme.

This research may not be satisfactory due to the limited references for studying basic financial statements focused on Korean Accounting System and Uniform System Accounting of Hotels(USAH), however, it may help to analyze the accounting practices of hotel industry in cheju area.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에 재학중인 류광미라고 합니다.

이번 저의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호텔업의 회계처리 실태”(제주지역 관광호텔의 회계제도를 중심으로)에 관한 참고자료를 수집하고자 이 설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자료는 순수한 학술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에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성심 성의껏 대답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호텔발전을 기원하며,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 5. 14.

지도교수 : 이 경 주

조 사 자 :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류 광 미

6. 귀 호텔의 영업방침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문은 어느 곳입니까?

- ① 객실부문 ② 식음료부문 ③ 부대시설부문 ④ 기타

II 기본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에 관한 사항

1. 호텔업에서 작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재무제표는 어떤 것입니까?(자료를 참고하시어 2개 이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현금흐름표 ④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⑤ 소유자지분변동표 ⑥ 현금수지계산서
⑦ 합계잔액시산표 ⑧ 기타()

< 자료 1 >



- ① USAH상의 기본적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소유자지분변동표, 재무상태변동표, 현금흐름계산서.
② 기업회계기준상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③ 상법상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2. 기업회계기준에서 필수적으로 작성이 요구되는 부속명세서 중에서 호텔업의 특성으로 보아 불필요한 명세서는 다음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2개 이상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① 유가증권명세서 ② 재고자산명세서
③ 투자부동산명세서 ④ 유형자산명세서

숙박객 외상매출금이란 투숙고객이 퇴숙과 동시에 지불한 대금으로서 투숙기간동안 발생시킨 외상금액 즉, Guest Ledger Accounts를 의미하고, 여신부외상매출금이란 고객이 퇴숙한 미회수된 외상금액 즉, City Ledger Accounts를 의미한다.

1-1. 귀하께서는 외상매출금 계정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호텔특성상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고 외상매출금명세서를 사용하여 상세하게 표시처리 하여야 한다.
- ③ 숙박객외상매출금과 여신부외상매출금으로 구분처리하여야 한다.
- ④ 기타()

2. 하의 호텔에서는 재고자산 계정을 어떻게 구분처리 하고 있습니까?(자료 3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 ② 식료재료, 음료원재료만으로 구분하고 있다.
- ③ 식료재료, 음료원재료, 잡화원재료, 저장품으로 구분한다.
- ④ 기타 ()

< 자료 3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의 과목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고 있음.

- ① 상품 ② 제품 ③ 반제품 ④ 재공품 ⑤ 원재료 ⑥ 저장품
- ⑦ 기타의 재고자산

2-1. 귀하께서는 재고자산계정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호텔특성상 적합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 ② 식료재료와 음료원재료만으로 구분한다.
- ③ 식료재료와 음료원재료, 잡화원재료, 저장품으로 구분한다.
- ④ 좀더 세분하여야 한다.
- ⑤ 기타 ()

3. 귀하의 호텔에서는 호텔업의 집기 및 비품, 기구, 도기, 유리, 은제, 린넨 등의 유형고정자산을 어떻게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까?(자료 4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① USAH에서 처럼 기구 및 비품과 도기·유리·은제·린넨 등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 ② 기업회계기준에서처럼 공구와 기구 그리고 비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 ③ 별도의 기물계정을 설정하여 표시하고 있다.
- ④ 기타()

< 자료 4 >

기물계정에는 식탁용 소요기물, 식탁서비스용 소요기물, 주방 칵테일조제용 소요기물, 주방용 유리컵류, 주방요리용 소요중기물, 주방조리용 소요기물, 주방용 도기그릇류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함.

3-1. 귀하께서는 호텔업의 집기 및 비품, 기구, 도기, 유리, 은제, 린넨 등의 유형고정자산을 어떻게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USAH에서 처럼 기구 및 비품과 도기·유리·은제·린넨 등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기업회계기준에서처럼 공구와 기구 그리고 비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③ 별도의 기물계정을 설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④ 기타()

IV.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

1. 귀하의 호텔에서는 매출액의 업장별구분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① 모든 업장별로 구분표시 하고 있다.
- ② 구분표시하지 않고 있다.
- ③ 손익계산서상에는 구분하지 않고 매출액명세서에서 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④ 기타()



1-1. 귀하께서는 매출액의 구분표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업장별로 구분표시 하여야 한다.
- ② 구분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손익계산서상에는 구분하지 않고 매출액명세서에서 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④ 기타()

2. 귀하의 호텔에서는 업장별로 매출원가를 구분표시 하고 있습니까?

- ① 업장별로 구분표시하고 있다.
- ② 손익계산서상에는 구분하지 않고 매출원가명세서에서 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 하고 있다.

③ 식료, 음료, 잡화, 기타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④ 기타()

2-1. 귀하께서는 매출원가의 구분표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업장별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② 손익계산서상에는 구분하지 않고 매출원가명세서에서 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식료, 음료, 잡화, 기타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기타()

3. 귀하께서는 호텔업의 특성에 맞는 원가계산기준제도의 설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별도의 호텔업 원가계산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

② 필요없다. 즉 현행원가계산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4. 귀하의 호텔에서는 봉사료 수입계정을 어느 항목에 기재하고 있습니까?

① 매출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②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③ 기타()

4-1. 귀하께서는 봉사료 수입계정을 어느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 기타()

